국제학 석사학위논문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에 대한 연구

– 한미 합동경제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U.S. Economic Aids to South Korea in the 1950s:

Focusing on the Combined Economic Board (CEB) Minutes

2016 년 8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레 미 지

A Research on U.S. Economic Aids to South Korea in the 1950s:

Focusing on the Combined Economic Board (CEB) Minutes

A Thesis presented

By

Le My Chi

To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a Master's Degree in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ugust 2016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에 대한 연구

- 한미 합동경제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지도 교수 박 태 균

이 논문을 한국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 년 08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레 미 지

레미지의 한국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 년 08 월

위 원 장 은 기 수 (인)

부위원장 한 정 훈 (인)

위 원 박 태 균 (인)

A Research on U.S. Economic Aids to South Korea in the 1950s: Focusing on the Combined Economic Board (CEB) Minutes

Professor Park, Tae Gyun

Submit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August 2016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Major
Le My Chi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Le My Chi
August 2016

Chair_____ Eun, Ki Soo _____ (Sign)

Vice Chair_____ Han, Jeong Hoon _____ (Sign)

Examiner_____ Park, Tae Gyun _____ (Sign)

<국문 초록>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에 대한 연구

- 한미 합동경제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레미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1950년대 미국 대한경제원조가 한국의 자본 축척 근원이며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방비 증가가 미 행정부에게 큰 재정 부담을 가져왔다. 1953년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New Look 정책을 세웠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비롯하여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를 감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냉전 체제가 확립된 상태에서 미국은 한국의 군사, 정치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미국은 경제안정화, 군사지원, 해외 민간투자 등에 중심을 두어 대한경제원조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하여 1950년대에 걸쳐서 경제 안정을 위하여 반인플레이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원조의 상당한 부분을 국방비로 전용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가 군사적 성격임을 잘 알 수 있다.

한미합동경제위원회 (Combined Economic Board (CEB), 합경위로 약칭))는 주한 미국 심사기관으로서 1952년 설립된 이래 미국의 대한경제원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이행하고 있었다. 합동경제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서 합경위가 1950년대 전반 구호와 재건에 집중하였는데 1956년을 기준으로 한 1950년대 후반 기술원조 강조, 무상원조(grant)에서 차관 (loan)베이스로 점차 전환하는 개발차관기금 (DLF, Development Loan Fund)도입 등 경제 부흥에 관련 활동들을 추진하였다. 합경위 자료에서 1950년대 후반 변화가 잘 나타나는데 그것이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의 본질적인 성격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1950년대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은 인플레이션을 반대하고 안정화정책을 하는데, 그러면서 경제부흥을 추진한 것은 서로 적합하지 않은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핵심어: 한미 합동경제위원회 회의록, 1950년대 미국 대한경제원조, 반인플레이션 정책, 대충자금, 개발차관기금, 잉여농산물원조.

학번: 2013-24017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기존 연구 검토 ····· 3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자료 ····· 6

제 2 장 한미 합동경제위원회의 개관 ····· 8

제 1 절 한미 합동경제위원회의 설립 ····· 8

제 2 절 한미 합동경제위원회의 구조와 활동 ····· 11

제 3 장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의 군사적 성격 ····· 17

제 1 절 대충자금통제를 통해 나타난 군사적 성격 ····· 17

제 2 절 잉여농산물원조를 통해 나타난 군사적 성격 ····· 23

제 4 장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 28

제 1 절 1950년대 반인플레이션 정책 ····· 28

제 2 절 1950년대 후반 대한경제원조정책 재검토 ····· 55

제 1 항 경제부흥에 대한 논의 ····· 56

제 2 항 기술원조 강조 및 개발차관기금 (DLF)도입 ····· 64

제 5 장 결론 ····· 72

<참고문헌> ····· 74

<Abstract> ····· 84

표 목차

[표 1]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조직표 ····· 12
[표 2] 대충자금특별회계 목적별 세출 실적 (결산) ····· 22
[표 3] PL 480호에 의한 품목별 도입실적 (1955~1960년) ····· 26
[표 4] 통화 공급량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 분석 ····· 31
[표 5] 대충자금 특별회계 수입지출 명세서 (1953.12~1958.7.31)· 37
[표 6] 한국정부의 일반회계, 국방비특별회계 및 국채금특별회계 현황 (1957년) ····· 41
[표 7] 양곡관리특별회계 (1957년) ····· 42
[표 8] 산업부흥국채 특별회계 및 산업은행 융자 (1957년) ····· 44
[표 9] 산업은행외의 금융활동(1957년) ····· 46
[표 10] 대충자금 및 기타 원조 (1957년) ····· 48
[표 11] ICA대충자금징수계정의 재정안정보조계정의 현황 (1958년 12월 14일까지) ····· 51
[표 12] 국민저축과 해외저축의 구성비 ····· 6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한국경제 성장을 연구하는데 있어 한미관계를 비추는 미국 대한 경제원조를 떼어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1950년대는 한미관계의 출발점이며 현재까지 한미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기본 틀을 만든 중요한 역사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가 한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준 기간이기도 한다. 또한 1950년대 한국은 미국과 경제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지원받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확정하였다. 미국의 경제원조가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형성에 결정적인 뒷받침이 되었고 1950년대 한국 경제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자본축적의 근원이었다는 점을 대부분 연구자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원조 지침을 마련하는 미국의 대한 원조정책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쟁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쟁으로는 1950년대에 걸쳐서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꼽을 수 있다. 학자들은 이에 관하여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논쟁의 중심에 서있다.

또한 1952년에 결성된 한미합동경제위원회 (Combined Economic Board, CEB, 이하 합경위로 약칭)는 한미 간 의견을 조율하고 원조물자의 가격결정과 분배, 원조 자금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심의기관이었다. 미국 정부가 원조 수혜국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원조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미국의 대외정책과 더불어 어떻게 원조를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미국은 원조수혜국 현지에서 경제 원조를 운영하는 원조기구들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한국에서도 예외 없이 합경위를 중심으로 경제 원조를 운영하였다. 합경위의 주요 논의는 일차적으로 미국의 대한원조 프로그램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합경위는 한미 간의 원조협정을 통해 제시된 기본 방침을 보다 구체화함과 더불어 1952년부터 1961년 해제될 때까지 원조운영 뿐만 아니라 1950년대 한국 경제정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1] (이현진, 2000) 1962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의 원조가 지속되는 동안 미국은 "합동경제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정책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나 합의 없이 한국의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처럼 한국 경제성장의 방향과 그 특징은 한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 통제에 대한 합동경제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가늠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0년대 대한경제원조를 사용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지 미국 기관인 합동경제위원회에서 토론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회의록을 분석하여 이 시기 원조를 실질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1950년대 대한원조정책이 어떻게 반영된 건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1950년대 경제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개발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의 변화여부와 더불어 1950년대 대한경제원조의 성격과 논점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를 연구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1950년대 이

승만 행정부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참고할 만할 정보거리가 되었으면 하고 더 큰 의미에서 1950년대 한미관계를 연구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희망한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도 원조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기존 연구 검토

이승만 정권 당시 경제는 원조경제로 인식될[2] (차철욱, 2003)만큼 미국의 경제원조가 1950년대 한국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를 다룬 연구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우정은과 도널드 스턴 맥도널드 (Donald S. MacDonald)등의 유능한 학자들의 책들을 꼽을 수 있다.

도널드 스턴 맥도널드의 "한미관계 20년사 (1945~1965년) 해방에서 자립까지"에서는 "극도로 빈곤한 한국이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1945년부터 남한의 자립적 경제성장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1965년까지의 결정적인 20년 시기를 포괄하였다."[3] 도널드 스턴 맥도널드 (2001) 맥도널드는 미국의 대한 경제정책이 1956년에서 1965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으며 한미 간의 경제 관계는 1956년 이후 구호와 재건에서 발전으로 변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국군 감축이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간주하였다.[4] 이처럼 1950년대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은 50년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1950년

대 전반에 구호와 재건을 위한 원조였으며 1956년을 기준으로 한 1950년대 후반에 발전을 위한 원조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의 한국군을 감축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정은의 "쾌속으로 행한 레이스: 한국의 산업화의 정세와 재정 (Race to the Swift: State and Finance in Korean Industrialization)"[5] (Jung En Woo, 1991)라는 연구에서는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의 대한정책이 변화되었고 이를 촉진한 결정적인 요소가 무상원조를 경제개발기금으로 대체한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주장한다.[6] (Park Tae Gyun, 1999) 위 학자들이 다루고자 하는 연구 중점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둘 다 1950년대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이 후반 들어서 변화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와 1950년대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하지만 박태균은 "1950년대 미국의 대아시아정책과 ECAFE" 연구에서 "아이젠하워 행정부 하에서 나온 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서들을 바탕으로 1950년대 미국의 대한정책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우정은과 맥도널드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과 정반대한 입장을 취하였다.[7] (박태균, 2003) 이 주장은 "1960년대 초반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변화, Change in U.S. policy toward South Korea in the early 1960s"에서도 미국의 대한정책 전환 기점이 1950년대 후반이 아니었고 1960년대 초반이었음을[8] (Park Tae Gyun, 1999) 강조하였다. 이현진 또한 "미국의 대한경제

원조정책 1948 ~1960" 연구에서 1950년대에 걸쳐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에 전면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9 (이현진, 1999)] 이러한 연구들은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를 조절하는 대한원조정책에 대해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이 한국 현지에서 원조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하는 미국 해외원조기관 중 하나인 합경위의 자료보다는 대부분 미국의 대외관계자료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와 국가안전보장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등 미국 내에서의 기관이 작성한 문서를 주 자료로 이용하였고 현지기관으로서 한국 내 합경위 회의록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현진이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isstance Agencies 1948~1961 (미해외원조기관 문서철) 중 Entry 422, Office of Far Eastern Operations, Korea Subjects Files, 1953-59 자료를 이용하여 합경위의 운영과 활동을 연구한 바가 있었으나 이 자료군의 방대함이므로 합동경제위원회 본회의에서 기록된 회의내용을 자세히 고찰하지 못한 것 또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1950년대 대한경제원조를 직접 관여하는 합동경제위원회 회의록을 추적하여 본회의에서 구체적 토론된 내용을 실질적 분석을 통하여 첫째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 군사적 성격을 알아내고 둘째 현재까지 논쟁이 된 1950년대 즉 아이젠하워 행정부 아래 미국 대한원조정책이 변화가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 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더불어 기존 연구 검토, 연구 방법과 자료를 다루었다. 제 2장에서는 한미 합동경제위원회 설립과 활동에 대해 기술하였고 제 3장에서는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군사적 성격을 대충자금통제를 통해 나타난 군사적 성격과 잉여농산물원조를 통해 나타난 군사적 성격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제 4장에서는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에 대해 논의하는데 여기서 1950년대 반인플레이션 정책과 1950년대 후반 대한원조정책 재검토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서술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자료

본 논문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의 시작점인 1950년대를 연구대상 시기로 한정할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 성과들의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던 한.미 합동경제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를 고찰할 것이다. 이 한.미 합동경제위원회 회의록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되어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총 220회 회의록이 빠짐없이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1950년대 대한경제원조를 주요 내용으로 담아 있는 원문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 시기 대한경제원조의 성격과 1950년대 대한경제원조가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후 현재 논쟁이 된 대한경제원조를 결정하는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이 1950년대 후반에 바뀌었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외교부에서 발행된 1950년대 한미 외교기록 중 합동경제위원회의 시작인 1952년 경제조정협정 (일명 마이어협정, Meyer Agreement)과 더불어 1953년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 (일명 백 . 우드 협약)등 경제원조의 운영 틀을 규정하는 한미 간의 경제협정도 함께 참고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협정들은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와 한국전쟁 이후 각 시기의 상황에 따라 경제원조를 운영 및 통제하는데 맞게 변경되어 새롭게 체결되었다. 이 자료들은 한미 합동경제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전반적인 미국의 1950년대 대한경제원조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다른 학자들이 연구해온 성과들을 가지고 있는 제 2차 자료들도 같이 참고하여 실증적인 접근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제 2 장
한미 합동경제위원회의 개관

제 1 절 한미 합동경제위원회의 설립

한국 전쟁이 북위 38도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후, 특히 1951년 4월이 들어서 남북 쌍방이 다 같이 군사적 승리, 곧 무력에 의한 자기 방식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될 무렵, 때마침 당시 주유엔 소련 대사 야콥 말리크 (Jacob Malik)는 한국전쟁의 휴전을 제안하였다. 교전 쌍방은 즉각 말리크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선언하고 같은 해 7월 10일 역사적인 휴전회담에 들어갔다.[10 (이대근, 2002)]

미국과 유엔은 휴전이 되면 한국경제의 재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일찍부터 한국경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있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원조계획을 구성하려고 하였다. 유엔의 경우, 휴전 후의 UNKRA[11]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유엔 산하 각종 전문기구의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농업, 식량 사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대안을 마련함은 물론이고 미국의 "네이산 협회 (Nathan Association)"와 용역계약을 맺어 한국경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12 (이대근, 2002)] 미국의 경우는 1951년 4월 ECA 원조프로그램이 종결되자 바로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원조안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였다. 한국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 체제를 통해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결정은 한국의 전시상황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의 모든 군사, 경제원조에 대한 유엔사령부

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한국과의 원조 문제 또한 유엔 체제 속에서의 조정이 필수적이였으며 새로운 원조협정은 유엔군사령부 측과 한국정부 사이에 진행된 것이었다.[13] (이현진, 2000) 협상은 1951년 1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1951년 11월 2일부터 13일 사이에 9번의 협상이 있었지만 아무런 결과를 이뤄 내지 못했다. 지지부진한 협상의 원인은 유엔군 대여금 상환과 외환통제 규정에 있어 한미간의 대립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엔군 대여금 상환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경제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군 대여금의 조속한 상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매일 10억 ~ 15억 원의 돈을 새로이 방출하는데 이에 대해 이것을 흡수하는 의무 기구가 없이 방출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유엔군은 그것을 원조물자 판매대금으로 상쇄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회담이 몇 차례가 지나야 1952년 2월에 열린 한미경제 회담에서 유엔군은 개인용돈으로 지출된 유엔군 대여금의 상환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한국 측은 대여금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다.[14] (최상오, 1999)

외환통제에 있어서 미국 측이 한국의 전반적인 외환통제와 관련한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었다.[15] (이현진, 1999) 통제와 조정의 권한을 가지는 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하에 원조 달러만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보유달러까지 감독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외환통제에 대한 조건이 한국 행정임에 대한 외국인 간섭으로

비칠 수 있고 현재의 국회와 여론의 상황을 고려할 때 외환통제 규정의 마련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이승만은 한국 헌법상 무역이나 자원으로부터 획득된 외환은 정부가 통제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외국 정부가 한국 외환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협정에 들어간다면 자신의 정적들이 이를 한국 주권의 침해라고 여론 몰이를 통해 공격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외환통제 조항의 변경을 강력히 주장했다.[16] (이현진,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유엔군 사령부 간의 원조협정 개정은 거듭되는 난항으로 인하여 매듭을 짓지 못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측은 표류된 한국과 유엔군 사령부 간의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절단을 설립하고 한국으로 보냈다. 1952년 4월 15일 클레어런스 E. 마이어 (Clarence E. Meyer)가 사절단 단장으로서 한국정부와의 토의에 들어가서 한미 간의 협상을 재개하였다. 사절단은 1950년 7월 28일의 재정협정 조항을 계속 고수할 것과 한국 외환자원에 대한 이용 협조를 위한 적절한 협정 마련 인플레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합동노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것 등 지시를 받았고 또한 유엔군 대여금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군 직원이 개인적으로 하게 될 대여금 및 이미 사용한 한국 통화이 모든 대여금에 대해서는 신속한 상환을 실시하고 1951년 12월 31일 이후에 대여된 한국 통화에 대해서는 실질 환율로서 상환하는 것으로 협정을 마련할 것 등을 지침으로 한국 정부와의 협상을 이끌었다.[17] (이현진, 2009)

결국 1952년 5월 24일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이 고통 끝에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 합동경제위원회도

같이 설립되었다. 합경위가 1950년대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1960년 초에 접어들어 4•19혁명이 일어나면서 위원회의 활동이 일시 중단됐다. 혁명 이후 미국 측이 원조를 재개할 의사를 보이면서 다시 위원회가 가동됐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다시 활동이 중단되었다. 1963년 한미 양국은 경제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한미합동경제협조위원회 (Joint United States-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ECC)를 신설했고 한미합동경제위원회는 폐지됐다.[18 (박태균, 2007)] 합경위는 1952년 7월부터 1961년 01월까지 활동하고 총 220회 본회의를 진행하였다.[19]

제 2 절 한미 합동경제위원회의 구조와 활동

합동경제위원회의 구조와 활동은 마이어 협정과 합경위의 헌장을 살펴보면 자세히 파악할 수가 있다.

> 위원회는 대한민국대표 1인과 국제연합 총사령관대표 1인으로써 구성한다. 대표를 임명하기 전에 쌍방은 그 대표임명에 타방의 합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행함에 소요되는 하부기구를 설치하며 그 자체의 운영절차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내의 적의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20 (Meyer Agreement)]

>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와의 효과적인 경제조정을 촉진함에 있다. 위원회는 경제에 관한 쌍방의 주요 협의체이며 본 협정실시에 관련하여 쌍방에 적의하게 수시로 건의를 한다. 여사한 건의는 쌍방대표의 상호합의에 의하여서만 행한다. 위원회는 조정 및 자문기관이며 운영기관은 아니다.[21(Meyer Agreement)]

위에서 나타났듯이 합동경제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경제문제를 논의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한 사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적시에 권고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유엔군 사령부 사이의 경제조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것

이다. 합동경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한미합동경제위원회는 한국대표 1인과 유엔군사령부대표 1인으로 구성되고 공식적으로 모임은 격주, 또는 각 대표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합동경제위원회 미국 측 대표는 전쟁 상황을 고려하여 군인인 헤런(T. W. Herren)이 맡았고, 한국 측 대표는 재무장관인 백두진이 맡았다. 1952년 6월 27일 합경위 예비회의 회의록을 보면 위원회가 합경위 사무실을 부민 빌딩으로 지정하고 첫째 회의를 1952년 7월 3일에 개최하고 매주 수요일에 규칙적 진행하기로 양측이 공동 합의하였다.[22]

(CEB-Minutes-52-1 (Preliminary to Organization))

<표 1>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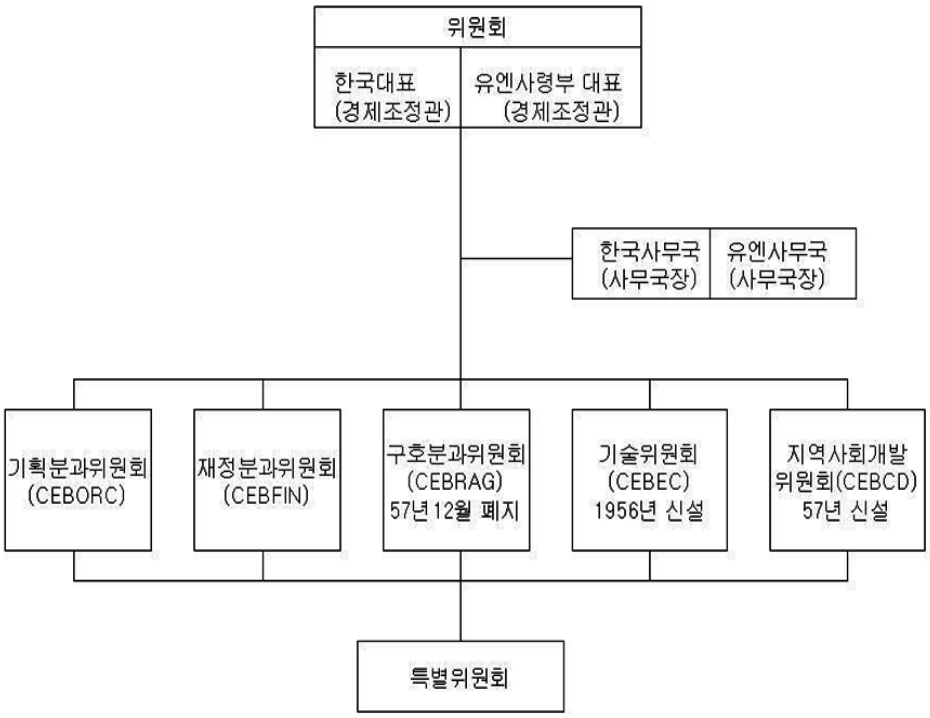

출처: 이현진. 1999.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 혜안. pp.236

합동경제위원회는 그 하부 조직으로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하부 위원회의 성원은 한국과 유엔 양측이 동등한 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합동경제위원회의 양측 대표에 의해 각각 임명되었다. 상설위원회들 중에 가장 먼저 설립된 부문은 기획위원회 (Overall Requirement Committee, CEBORC)였다. 기획위원회는 1952년 7월 22일 헌장을 작성하였다.[23] 기획위원회는 합경위의 하부기관으로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출입 프로그램, 각 회계연도의 분기별 원조 요구 프로그램의 작성 및 협의, 외환 및 대충자금 운영프로그램의 심의 등에 관련 임무를 맡았다.[24] (이현진. 2009) 그 다음에 구호위원회 (Relief and Aid Goods Committee, CEBRAG)는 1952년 8월 18일 헌장을 작성하고 유엔 원조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는 구체적인 장비와 구호품들을 결정하는 주요 의무가 있었다. 또한 재정위원회 (Finance Committee, CEBFIN)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목적에 중심을 두고 조치, 건전한 재정과 통화정책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활동하였다.[25] 이에 따라 재정위원회는 1952년 12월 9일에 헌장이 작성되어 규칙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조세수입을 최대화하고 적절한 신용통제를 수립하며 적절한 가격과 임금통제, 외환의 가장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합동경제위원회에 권고하는 역할을 이행하였다. 게다가 계획된 조치들과 실제 개발된 것. 재정회계정책과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를 합동경제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였다.[26]

앞선 상설위원회들보다 늦게 설립되었지만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중요한 하부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기술위원회 (Engineering Committee,

CEBEC) 및 사회개발위원회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CEBCOM)가 각각 1956년과 1957년대 헌장 작성을 시작하였다. 기술위원회에 대한 신설 제안이 1956년 9월에 제출되었다.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은 통신, 산업, 광업, 전력, 공공행정, 농업, 수송 등 각 부문의 행정과 정책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 책임이 있었다. 동시에 원조프로그램의 투자 부문 개발과 관련한 권고안의 작성, 한국정부와 국제 협조처, 그 밖의 민간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경영기술 계약의 관리,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승인된 철차에 따라 기술자들에게 주어질 작업 훈련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등의 특별 임무를 맡았다.[27] (CEBORC-P-52-2) 지역사회개발위원회는 1957년에 신설되었다. 이 위원회 설립 목적은 1) 승인된 사회개발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제안을 제공 2) 사회개발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평가를 제공 및 기본정보를 개발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을 위해 건의 3) 사회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한미 공동 농촌 프로젝트에 대한 개량활동 검토 및 조언 4) 훈련활동, 공적정보, 사회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대한 건의 등으로 규정하였다.[28] (CEB-P-57-499)

각 상설위원회는 한국과 유엔군사령부 대표에 의해 임명된 2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각 위원회는 적어도 한 달에 1번 또는 그 이상 회의를 열어 합동경제위원회가 지정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권고하도록 하였다. 분과위원회에 참여한 한국 측 인물들도 상공부 장관, 재무부 차관, 사회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 장차관급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합동경제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외의 상호 연락 및 활동

의 협조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위원회의 공식적인 파일과 기록들을 정리하고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합동경제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자그룹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합동경제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사전에 조사 검토한 후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의제를 논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합경위가 1952년에 정식적 설립되었고 같은 해 6월 27일 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최조 회의에서 합경위의 사무실 위치, 사무실 설비 지원. 사무실 운영 경비 등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졌다. 동시에 합경위 조직 및 인사 측면에서 합경위 양측의 사무국 대표 지정,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 지정, 상임위원회 운영 절차 등을 같이 토론하였다. 합경위의 첫 번째 회의는 7월 3일 부산에서 시작하기로 하고 매주 수요일에 열리고 합경위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회의도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29] (CEB-Min-52-1) 그러나 1950년대 후반까지 합경위의 활동은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 했다. 본회의는 1952년 5월부터 1953년 3월에 거쳐서 단지 13회에 그쳤고 1956년 6월까지 한 동안 회의를 진행되지 않다가 같은 해 6월 27일이 돼야 합경위 본회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회의는 정례화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이루어졌던 이유는 전시 상황에서 원조프로그램은 구호원조를 중심으로 불규칙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조에 기반한 논의를 진행시키는 합경위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합경위 각 분과별 임원구성이 완료되었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아직도 수립되지 못하고 있었다. 외환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재정안정 계획 수립을 위한 합경위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못 정하였

다.[30] (이현진, 2010) 1953년부터 1956년까지 긴 기간 동안 합경위 활동이 중단된 이유는 유엔군사령부와 한국 정부사이의 불신, 긴밀한 협력 체제의 부재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1956년 6월 27일부터 합경위의 회의는 규칙적으로 전개되고 1963년 정식적으로 해산될 때까지 총 220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제 3 장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의 군사적 성격

제 1 절 대충자금 통제를 통해 나타난 군사적 성격

1950년대 세계 질서는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났다. 동서 양 진영 간의 냉전이 한국전쟁 때 무력대결로 표현되었다. 결국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은 인근 사회주의 국가에 대규모 경제원조로 경제부흥을 달성시켰다. 북한은 중국 또한 소련의 지원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남한을 향해 각종 평화공세를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1950년대 미국의 경제원조의 중요 관심지역과 성격이 변화되었다.[31] (김정식, 2002) 미 행정부는 1949년 10월에는 상호방위원조법 (Mutual Defense Assistance Act)을 제정하였으며, 1950년대에 이르러 군사원조의 성격을 강하게 띤 상호안전법 (Mutual Security Act, MSA)을 마련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한테 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원조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가 모든 대외원조를 상호안전법 아래로 통합하였다. 상호방위원조법은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로 나누어지나, 경제원조도 방위지원이 그 중심을 이루었으므로 군사원조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32] (이현진, 2009) 다르게 말하자면 1950년대 미국원조의 중심이 서유럽의 경제회복지지로부터 자유 아시아의 방어지지로 선회하였고 미국이 대외원조의 중심적 성격이 순경제원조로부터 군사원조로 이동하였음을 잘 보여준다.[33] (김정식, 2002) 이것은 경제적 수단을 통한 대 사회주의권 봉쇄정책이 군사적 수단으로 전환되었음을 의

미하는 것이었다.[34] (박태균, 2007)

한편으로 1953년 아이젠하워 (D.D. Eisenhower) 대통령의 임기가 들어서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해 늘어난 군사비와 대외원조가 미국의 재정 적자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미국 정부에 있어 재정 적자를 완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재정지출 감축 즉 군사비와 대외원조를 감축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은 그 당시 제3세계 국가 중에 미국의 대외원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한국을 지목하고 대한원조 감축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이를 진행하는데 첫째 한국군 규모 축소, 주한 미군 철수와 함께 유지비가 많이 드는 재래식 군비를 감축하는 대신에 핵탄두를 증가시키는[35] (권오신, 2005) 무기 현대화, 둘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일본에게 떠넘기는 지역통합정책, 셋째 경제 재건과 사회 안정화를 통해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력을 유지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36] (Park Tae Gyun, 1999) 그런데 중국군이 1958년까지 북한에서 계속 주둔하는 상황과 정전협정에서의 신규무기 도입금지 규정 때문에 첫째 방안이 불가해졌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질서의 확보도 일본에 대한 “역사적 기억”으로 인해 미국을 대신하는 군사적 역할을 일본에게 맡길 수가 없으며 그 당시 일본 경제부흥이 충분이 달성하지 않아서 경제적 역할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두 번째 제안도 무산되었다.[37] (박태균, 2009) 결국 미국은 마지막 방안 즉 한국의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경제를 재건하면서 안정화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즉, 1950년대 한국 경제재건과 안정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의 군사력, 방위력을 유지하는데 있었다. 이에 따라 1950년대 대

한원조가 군사 지원, 경제 안정화, 해외 민간투자 등을 강구하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 (New Look) 정책을 복무하는 역할을 행사하였다. 이 부분에서 대한경제원조가 대한정책 지침의 일축이 되어 주는 군사적 지원을 합동경제위원회 회의록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951년 마이어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원조에 관련 사항을 토론했을 때 대한경제원조의 군사적 성격을 잘 보여 준 점이 많다. 대충자금계정은 처음에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물론 나중에 미국 육군부는 국무부에게 대충자금계정이 유엔군 사령부의 계정이 아닌 한국의 계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지만 대충자금계정을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직접 군사비용에 해당하는 유엔군 대여금의 상환 방식에 있었다. 유엔 당국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유엔군 대여금을 비롯한 전쟁비용을 원조물자 판매대금을 통해 상쇄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한 것이었고 이는 결국 경제원조가 군사적 목적에 복무해야 한다는 당시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38] (이현진, 2009)

그리고 합경위가 탄생한 시점인 1952년 5월 24일 부산에서 서명된 마이어 협정의 선두 부분에서 “공산군의 침범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으로부터의 원조를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국제연합은 1950년 6월 27일부 안정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제연합 회원국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군사침략을 격퇴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함에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공여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다.[39] (Meyer Agreement) 즉 대한경제원조의 가장 먼저의 목적은 한국을 북한의 군사침략

사태에서 구해주고 한국의 안전은 물론이고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군사용 원조로 규정된 것이다. 물론 한국으로 들어온 원조는 군사지원 목적 외에 치열한 전쟁 때문에 도탄에 심각히 빠져 있는 한국 국민을 도와주는 구호 목적에 큰 의미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국제연합은 1950년 7월 7일부 안정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군사병력과 기타 원조를 공여하는 회원국가가 여사한 병력과 원조를 미합중국 관리하의 통합사령부에 제공할 것을 건의한바 있고 국제연합은 1950년 7월 31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통합사령부에게 한국 국민의 구호와 원조에 관한 필요를 결정하여 여사한 구호원조를 제공함에 관한 현지절차를 수립한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대한원조가 국제연합군 총사령부 즉 군사직영기관 하에 관리된 것이다.[40] (Meyer Agreement)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조정협정은 한미정부 간의 협정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유엔군 사령관 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경제조정협정에 대한 미국의 목표는 첫째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복무하면서 한국에서의 충돌을 유엔체제를 통해 해결해보고자 한다는 것, 둘째, 한국이 증가하는 방어력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군사력을 향상시키는 것. 셋째, 한국에서 공산주의의 침략과 점령에 대한 방어벽으로서 계속 노력하고, 미국의 안보적인 이익과 배치되지 않도록 한국의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 등이 대한원조가 군사용 원조이라는 것을 입각시켜 준다.[41] (이현진, 2009)

합경위가 설립하고 나서 합경위 운영절차를 제정하는 문서에서도 합동경제위원회가 원조에 의한 통합사령부 프로그램의 모든 경제적인 측

면 및 한국 경제 프로그램에 관련된 측면들을 감안하며 한국에서 유엔사령부의 군사 노력에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유엔군사령관의 군사 작전에 대한 성공한 지휘 특권을 인정한다.[42 (CEB-P-52-1)] 이렇게 대한원조 운영과 통제에 직접 관여하는 합경위의 설립 목적부터 운영규칙까지 경제원조의 군사적 성격이 선명하게 반영되었고 1950년대 미국이 한국의 군사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대한경제원조를 매개로 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목적 이해는 대충자금의 운영하는데서 가장 잘 드러난다. <표 2>에 따라 1954~1960년 동안 대충자금은 총 7,569억 환이 지출되었는데 국방비 보전에는 총액의 35%인 2,671억 환이 사용되었다. 특히 1955년과 1960년대 국방비 지출 비율이 대충자금의 거의 절반인 44%에 달하였다. 즉 대충자금 전액을 경제 부흥 사업에 투입하는 대신 국방비에 충당되었고 경제사업보다 군사력 강화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안정에 중점을 두었음을 의미한다.[43 (신용옥, 2000)]

<표 2> 대충자금특별회계 목적별 세출 실적 (결산)

(단위 : 백만 환)

	1954년도	1955년도	1957년도	1958년도	1959년도	1960년도	계
1.국방비 보전	12,729(37%)	51,200(44%)	48,330(31%)	48,300(26%)	53,000(37%)	53,469(44%)	267,028(35%)
2.경제부흥사업	16,999(50%)	60,277(52%)	102,571(67%)	134,255(72%)	89,038(61%)	65,586(53%)	468,726(62%)
a.(관영사업)	10,380(31%)	48,283(42%)	84,469(55%)	82,832(44%)	57,926(40%)	48,484(39%)	332,374(44%)
경제부흥특별회계	8,057	45,993	84,469	82,832	57,926	48,484	327,761
교통사업특·회융자금	2,305	2,049	0	0	0	0	4,354
통신사업 〃	18	241	0	0	0	0	259
전매사업 〃	0	0	0	0	0	0	0
b.(민영사업)	6,619(19%)	11,994(10%)	18,102(12%)	51,423(28%)	31,112(21%)	17,102(14%)	136,352(18%)
민간융자금	6,619	11,994	18,102	51,423	31,112	17,102[1]	136,352
3.기타	4,347(13%)	4,432(4%)	2,593(2%)	3,013(2%)	3,173(2%)	3,623(3%)	21,181(3%)
외자특별회계	1,741	1,702	1,524	1,584	1,342	1,522	9,415
협정제비	530	2,619	1,069	1,429	1,831	2,101	9,579
UNKRA이관금	1,398	0	0	0	0	0	1,398
물자취급비	678	111	0	0	0	0	789
계	34,076 (100%)	115,909 (100%)	153,494 (100%)	185,568 (100%)	145,211 (100%)	122,678 (100%)	756,935 (100%)

출처: 신용옥. 2000.「1950년대 대충자금 및 미국 대한원조의 경제적 성격」.『한국민족운동사연구』.Vol.31. pp.232

합경위의 제 30차 회의에서 1954/55 회계연도 물건과 서비스 조달하기 위해 한국군사자금으로서 120억 환을 대충자금계정에서 방출하기로 하였다. 한국 예산국장 (Director of ROK Bureau of the Budget)에 따라 1954/55 회계연도 1,330억 환 대충자금이 전란수습비계정 (War Account) 에 전입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44 (CEBORC-Min-55-8)] 그리고 1958 회계연도 한국의 재정부 장관이 1958년 방위원조가 경제원조와 별도로 제공될 건지 유엔 측한테 문의하였다.[45 (CEB-Min-57-31)] 이것은 1958년까지 경제원조와 방위원조가 아직도 구분되지 않았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1959년 합경위 제 137차 본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인 송인상이 유엔 측 대표에게 약 48.3백만 달러 대충자금을 현재 군사지원에 소비되고 있

다 설명하였다. 즉 군사 지원의 약 70%가 대충자금에서 나오고 나머지 군사지원의 30%만 일반계정에서 나온 것을 의미했다고 발표하였다.[46 (CEB Min-59-1)] 1950년대 후반이 들어서 경제원조와 군사원조가 동시에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충자금이 과다한 금액을 군사지원으로 전입해야 되는 것을 통해 더욱 더 대한경제원조의 군사적 성격이 잘 나타난다.

결국 한국전쟁을 계기로 재편된 상호안정보장법 체제하의 미국 원조는 원조의 중점이 경제원조에서 군사원조 중심으로 전환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상호안전보장법 체계하의 미국 원조가 군사원조 중심이라는 것은 이 법의 체제하에서 군사원조가 그 중요도에 있어서나 비중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경제원조의 형태로 제공된 방위 지원 원조에서도 군사원조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경제원조의 형태로 제공된 방위지원원조의 군사적 성격은 그 원조 물자의 판매 대금인 대충자금의 사용 용도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1954년~1960년까지의 기간 중에 대충자금 지출 총액의 35%가 국방비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한국에 제공한 경제원조의 군사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47 (신용옥, 1998)]

제 2절 잉여농산물 원조를 통해 나타난 군사적 성격

대한경제원조를 통한 군사비 조달문제는 PL 480호 미 잉여농산물 도입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48] 이 문제 또한 합경위 회의에서 자주 토론된 바였다. 미 공법 480호 (Public Law 협정 No. 480)에 의한

미국 잉여농산물 원조는 한.미 간의 최조의 잉농물 도입협정을 통하여 1955년 5월에 10백만 불 어치의 원면과 5백만 불 어치의 엽연초 도입이 시작하였다. PL 480호에 의한 미국의 농산물원조는 동 법상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제 I 관 (Title I: Sales for foreign currency)원조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단순한 식량원조 목적만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까지 겸한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수원국의 현지통화로 판매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그 판매대전으로는 일정한 소요 경비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미국으로부터의 무기류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제 II 관 (Title II: Famine relief and other assistance)원조는 수원국의 질병이나 기아 등 긴급한 식량구호 사정에 즈음하여 무상의 현물베이스 식량 원조를 가리킨다. 제 III 관 원조는 미국의 (Commodity Credit Corporation)상품신용공사를 통한 민간베이스 해외식량지원의 경우인데 이 외국산 전략물자의 교환을 위해서 빈민구제용의 비영리단체에의 기증용 등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제 IV 관 원조는 무상원조가 아니라 주로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위하여 장기, 저리의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하는 농산물 차관의 경우이다. 한국의 경우 잉여 농산물 도입은 대부분 제 I 관 원조에서 초래한 것이었고, 제 II 관 원조 또한 제 III 관 원조의 구호적 식량도입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제 IV 관에 의한 농산물 차관인 전혀 없었다. 그리고 제 I 관 원조에 의한 농산물원조가 현지 화폐인 환화베이스로 판매되는데 그 판매대전을 전부 한국 측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한.미 양국이 일정 비율로 분담 사용하였다. 따라서 그 것이 일단 한국 내에서 환화베이스로 판매된다고 하

는 사실과 또한 그 판매대전 사용비율을 어떠하든 한.미 양국이 분담하여 사용한다고 하는 두 가지 조건에서 본다면 이 잉여농산물 원조를 전액 무상원조의 성격으로 다룰 수 없다고 하겠다. 1955년도의 경우는 미국 측의 특별 요구에 따라 한.미 간의 사용비율이 40 대 60으로까지 되어 오히려 미국 측 사용비율이 더욱 높았다. 1956년이 들어서 그 비율은 85 대 15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85% 한국 측 사용분은 전액 정부예산상 군사비 항목으로 전입되어 미국으로부터의 군수물자 구입에 충당되었다. 이것은 이 원조의 군사적 성격을 잘 보여 주었다.[49 (이대근, 2000)] 구체적으로는 1957년 1월 15일 합경위의 제 90차 회의에서 PL 480호에서 방위부문으로 77억 환 자금이관에 대해 의논하였다.[50 (CEB-Min-58-2)] PL 480호 원조 물자의 판매대금은 미국 측 사용분은 주한 미 대사관 경비로 지출되었고, 한국 측 사용분은 80~90%가 국방비로 전입되었다.[51 (이현진, 2009)]

PL 480호에 따라 도입된 품목은 쌀, 보리, 밀, 옥수수 등 식량의 도입이 약 35.2 백만 달러로 전체 도입량의 7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 엽연초 18.2백만 불로 총액의 11.1%를 차지하고 돈육 통조림은 8.3백만 불로 전체의 5%를 차지하였다. 1955~1959년 기간에 PL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원조가 약 164.3백만 불이 되었다. (<표 3> 참조)

<표 3> PL 480호에 의한 품목별 도입 실적 (1955~1960년)

단위 (백만 달러)

	1955	1956	1957	1958	1959	합계
1) 식량	**–**	**35,149**	**18,758**	**49,978**	**25,228**	**129,113(78.6)**
밀	–	7,504	2,504	31,590	24,564	66,162(40.3)
보리	–	12,783	4,276	14,805	–	31,864(19,4)
쌀	–	14,862	11,978	–	–	26,840(16.3)
옥수수,기타	–	–	–	3,583	574	4,157(2.5)
2) 원자재	**14,839**	**3,079**	**–**	**–**	**7,748**	**25,666(15.6)**
원면	9,991	448	–	–	7,748	18,187(11.1)
엽연초,기타	4,848	2,631	–	–	–	7,479(4.6)
3) 소비재	**–**	**8,668**	**–**	**–**	**804**	**9,472(5.8)**
돈육 통조림	–	8,290	–	–	–	8,290(5.0)
식용유,기타	–	378	–	–	804	1,182 (0.7)
합계	**14,839**	**46,896**	**18,758**	**49,978**	**33,780**	**164,251 (100.0)**

출처: 이대근. 2002. 앞의 책. pp.335. 재구성

이상의 PL 480호 잉농물원조 이외에 미국의 농산물원조를 받아들인 또 다른 루트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MSA 402조에 의한 농산물원조였다. 역시 이 원조의 목적도 PL 480호의 것과 동일하게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PL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도입만이 아니라 원조액의 일정비율 (25%)을 농산물로 받아야 한다는 미국 MSA법 제402조의 규정에 따라 ICA 원조에서도 다량의 농산물이 도입되는데, 이의 판매대금 또한 전후 증대한 막대한 군사비 보전을 위해 활용되었다.[52] (홍성유,

1962)

유엔 측 원 (William E. Warne)대표가 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1956년 MSA 402조에 의한 잉여곡물 판매대전 사용 문제를 잘 제급했듯이 “한국 재정부가 환화베이스로 환산된 잉여곡물 판매대전을 받는 대로 전부 금액을 국방부계정으로 예치할 것이다.”라고 명시하였다.[53] (CEB-Min-56-18) 합경위 제 130차 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가 한국에 대한 방위 지원 원조는 매년 의회에 의해 감소되고 있지만, 한국이 구매할 수 있는 MSA 402조에 의한 농산물 구매량이 아직도 40백만 불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MSA 402조에 의한 구매량은 35백만 불 또는 32백만 불로 감소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는 한국이 군사력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상 이를 위해 PL 480호에 의한 잉농물원조 구매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하며 한국이 원조로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MSA 402조에 의해 받는 상품 비례를 더 공정한 배열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유엔 측에게 전하였다.[54] (CEB-Min-58-43) 제 161차 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는 MSA 402조 프로그램이 법적 사항이고 미국 의회가 잉여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방위지원 자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은 원조 프로그램 특별 요구로 기재되었다.[55] (CEB-Min-59-27)

제 4 장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제 1 절 반인플레이션 정책

제 3장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1950년대 아이젠하워 (Eisenhower) 행정부의 저개발국 대외정책이 군사지원, 사회 안정화, 해외 민간투자로 짧게 요약할 수가 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한 것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해 늘어난 군사비와 대외원조에서 초래된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그 당시 미국의 대외원조 공여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나라가 한국이라서 한국이 원조를 감축할 대상이 되었다. 미국이 세계정세와 한국 상황을 감안하여 원조 감축 제안들 중에 한국 경제재건과 사회 안정화를 통해 한국이 더 많은 군사적 부담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미국이 한국 사회를 안정화시키려면 경제를 안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경제안정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인플레이션을 궁극적으로 억제해야만 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1945년부터 진행해 왔던 반인플레이션 정책이 1950년대에 걸쳐서 계속 미국한테 강조되었다.

1950년대 인플레의 원인은 한국정부의 재정 부족과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초래되었다.[56 (박태균, 2009)] 1945년 해방 후 남북 분단은 자본, 기술, 원료, 시장을 일본제국에 의존했던 한국 경제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다. 이 충격은 산업생산의 급격한 위축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생산동향은 정치적 혼란과 원료 부족에 기인하여 지속되고 한국정부가 설립 시점인 1948년이 되어야 점차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다시 역전시켰다. 1950년대 초부터 안정되기 시작한 물가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그 추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점차 빠르게 상승하였다.[57] (최상오, 2003) 1950년 7월 28일 "주한 국련군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으로 시작된 유엔군대여금은 통화량 증가의 30~7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이것은 주로 전비조달을 위해 팽창된 재정지출이 재정적자를 초래하였고, 그 대부분은 한국은행의 통화발행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전개되었다. 그런데 지출삭감과 한국정부세입 증대만으로는 재정적가를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재정균형과 재정안정회복을 위해 대외원조를 이용하고자 하였다.[58] (최상오, 2003) 통화량의 급속한 증발에 더해 산업시설은 1951년 8월말 현재 건물 44%, 시설 42%가 파괴되었으며 주요 생필품 공업인 방직공업은 건물 62%, 시설 64%로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다. 생산시설의 파괴로 생필품 공급이 줄어들어 물가 앙등을 촉진하였다.[59] (이대근, 2002)

미국 국무부가 작성하는 전쟁 후 한국과 북한 재건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전쟁 후 한국은 한국군 20개 사단을 유지하고 22백만 여명 인구의 적당한 생활수준을 맞추는데 재원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정전 조건 하에 한국군을 유지하는 비용은 연간 600백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인당 70달러인 한국전쟁 전 생활 기준으로 회복하려면 소비소요는 15억 달러가 필요하다. 유지, 수리, 재건, 확보에 필요한 투자가 연간 300백만 달러로 예상되었고 민간용 목적만으로도 일 년에 최소 200백만

달러가 예상되었다. 그래서 전쟁 후 한국 경제가 요구하는 금액은 26억 달러로 추정된 반면에 한국 국내 재원에 의한 가용한 물자와 서비스가 17억 달러 밖에 되지 않아 900백만 달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당시 한국경제가 국내 생산으로 군사와 민간의 요구의 2/3만 충당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1950년대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때문에 과다한 군사지출에 초래한 이승만 행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 상태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국내 자원과 관련 시설의 열악함도 같이 밝혀준다.[60]

합경위에게 전달된 1952년 12월 30일 심사그룹 (review group)에 제출된 1953-54 회계연도 예비보고에서 한국안전예산 (ROK Security Budget) 실제 적자는 4조 293억 원에 달하였다. 합경위가 이러한 재정적자를 승인된 프로그램 지출 감축, 한국정부세입 인상, 대외원조 증대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61]

<표 4>는 통화팽창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1953/54 회계연도 절대적인 통화 팽창량이 1952/53 회계연도보다 약 3배정도 상승하였다. 이러한 지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한 한국 정부의 재정적자의 결과물로서의 1953/54 회계연도 통화팽창이 선명하게 반영되었다. 또한 통화팽창이 앙등하는 추세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이 정부외환수입, 정기예금과 원조물자에 의한 판매대금 즉 대충자금 등이 있었다.[62]

<표 4> 통화 공급량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 분석

MAJOR FACTORS AFFECTING THE MONEY SUPPLY
(Billions of Hwan)

	U.S. FY 1953	Estimated U.S. FY 1953/54 2/
Factors Increasing Money Supply:		
1. Government Deficit	2.9	31.5
2. Net Drawings by UN Forces	6.9	8.6
3. Bank Credit	9.3	8.4
(to Government Agencies)	(2.5)	(2.5)
(to Others)	(6.8)	(5.9)
4. Other Factors (net)	.1	6.1 3/
Total	19.2	54.6
Factors Decreasing Money Supply		
1. Aid Goods Sales Proceeds 4/	3.0	6.5
2. Official Foreign Exchange Proceeds	5.6	19.1
3. Time Deposits	3.5	6.0
4. Total	12.1	31.6
Net Increase in Money Supply	7.1	23.0
Money Supply at End of Period	15.1	38.0

1/ Money supply defined to include note circulation outside banks and checking deposits held by the general public (excluding Government and UN Forces deposits).

2/ Based on actual data for 11 months period June 1953/May 1954.

3/ Largely Bank of Korea foreign exchange purchases.

4/ Net of disbursements for aid goods distribution costs.

SOURCE: Bank of Korea
Republic of Korea

출처: Comparative data on North and South Korea Reconstruction, Central Subject Files, 195-1956 [Entry UD 1276],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Mission to Korea. Executive Office, Economic Condition

이와 같이 반인플레정책이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를 제지하기 위해 우선 정부재정의 균형, 즉 세입의 증가와 세출을 억제하는 철저

한 긴축정책을 강조하였다.[63 (차철욱, 2003)] 더불어 그 당시 정부세입 중에서 대충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4~1959년 간 연평균 71.5%에 달하였고 특히 1958년에는 93%, 1959년 85.4%에 이른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대충자금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수단 중에 가장 유력한 도구가 되었다.[64 (이대근, 2002)] 그래서 유엔군대여금이 중심으로 통화가 급격한 팽창되고 인플레이션이 점차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경제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대충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1952년 5월에 체결된 마이어협정 (Meyer Agreement,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에서 잘 드러난다.

마이어 협정은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보류되었던 ECA원조에 의한 대충자금을 유엔군 대여금의 지출을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한국 정부의 국내 채무를 반제하는데 사용 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 후 앞으로 적립될 대충자금의 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마이어협정은 이 시기 유엔군에 의해 제공되었던 원조물자의 대충자금을 한국은행의 특별계정에 예치할 것을 재차 확인하고, 그렇게 적립된 대충자금을 먼저 주한 원조기관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정부의 “국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것을 명문화하였던 것이다. 대충자금을 한국 정부의 차입금을 변제하는 자금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미국정부의 입장은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경제안정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65 (최상오, 2003)] 이 내용은 마이어 협정 통첩전문 부분에서 자

세히 기재된 것이다.

> 한국경제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 대한민국정부는 서력 1950년 7월 28일자 재정협정에 의하여 이전 또는 이후에 대여하는 모든 한국통화를 한국은행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차입금으로서 부담할 것. (생략)서력 1948년 12월 10일자 원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또는 동 협정 혹은 동 협정에 의하여 제공한 물자를 판매한 결과로 生한 대충자금, 원조물자계정과 관계자금 및 계정과 또한 동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자의 금후 판매수입금은 대한민국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원조물자차입금의 반제용으로 위선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대한민국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기타 현존 차입금의 반제용에 사용할 것.[66] (Meyer Agreement)

이어서 한국전쟁의 휴전을 눈앞에 둔 1953년 4월, 미국은 한국경제의 실태파악과 원조규모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헨리 J. 타스카(Henry J. Tasca)가 단장으로서 한 타스카 사절단을 한국에 보냈다. 타스카 사절단이 작성한 타스카 보고서는 이후 미국의 대한 원조정책의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 이러한 타스카 보고서를 바탕으로 1953년 8월부터 한국 국무총리 백두진과 미국 경제조정관인 우드 (C. T. Wood) 사이에는 한국의 재정적자 보전과 경제재건을 위한 회담이 시작되었다. 회담에서는 환율, 소비재와 자본재의 비율, 경제안정 정책 등 한국 경제의 복구 방향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을 4개월에 걸쳐 교섭하였는데, 1953년 12월 14일 이른바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일명 “백·우드 협약”)을 체결되었다.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이라는 타스카 협약의 이름은 전쟁으로 인한 파괴된 한국경제를 재건하고 계속 증진하는 “한국의 '인플레' 앙진을 방지하며 안정된 경제 및 재정 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그 당시 최고 과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준다. 협

약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를 둘러싸는 환율, 투자계획 재원조달, 가격정책 수립 등 여러 문제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 조항들의 중심을 총괄적 말하자면 미국으로부터 받는 원조물자에 의한 대충자금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 당시 대충자금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

백.우드 협약에 따라 1953년 8월 28일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불화표시가격(생략)에 해당하는 금액, 미합중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수시로 여사한 원조의 불화가격을 통지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이 통지를 받으면 합의된 환율로서 산출한 환화상당액을 한국은행에 대한민국정부 명의의 특별계정 (Special Account)에 예입한다." 그리고 "적립된 예치금 총액의 5%이하의 금액 혹은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다른 고율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대충자금계정에서 본건협조계획을 담당하는 국제연합 및 미국제기관의 한국 내 소요환화경비로 지불될 것이다. 대충자금의 잔여금액은 책정된 재건투자의 정당한 자금수요, 대한민국전란수습비 특별회계예산중 적당한 세출항목에 충당하기 위하여 혹은 기타 합의된 목적에 합동경제위원회가 관리 운영한다."라고 잘 규정되어 있었다.[67 (백.우드 협약)]

이처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세입 총액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충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안정화 사업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 당시 인플레의 주요 원인이 된 통화량 팽창을 줄이려면 대충자금 방출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즉, 대충자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도록 합경위가 각 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충자금계정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 1954년 3월에 대충자금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다. 대충자금특별회계는 적립금계정, 전입금계정, 융자금계정, 징수금계정으로 분리되어 대충자금을 통제하였다.

적립금계정(Counterpart Fund Account)의 세입은 원조물자 판매를 통해 획득한 환화자금의 예치된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적립금계정에 있는 대충자금은 전입금계정으로 이전된다. 이는 평균 적립금계정 총액의 83%를 차지한다. 이어서 전입금계정으로 이전된 대부분 대충자금은 다시 경제부흥계정과 전란수습비계정으로 이전되고 관련 지출을 충당한다. 경제부흥회계는 전입금계정 세출 총액의 55%를 차지하여 한국 정부의 부흥계획에 입각하여 추진된 관영사업, 즉 자금 회수 속도가 느린 사회간접자본의 재건과 기간산업의 건설에 필요한 재정투자로 사용되었다. 한편으로 전란수습비계정은 "거대한 군사비로 인한 대한민국정부의 전란수습비 특별회계상의 예산부족을 세출의 주도한 조절 및 조세와 기타 세입의 증수를 통하여 최소한도로 억제하기 위하여" 대충자금을 전입되고는 전부 국방비로 지출되었다. 한국정부 일반회계 세입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하였는데, 이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충자금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세입이었다. 이와 같이 융자금계정으로 이전된 대충자금도 한국 정부가 추진한 부흥계획에 필요한 국내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었다.[68 (최상오, 2003)]

징수금계정 (원조물자징수계정, Aid goods Collection Account)은 "원조물자의 판매로 회수되는 전자금은 동원조물자의 국내 즉송비용충당

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예치하는 계정이다. 징수계정의 대충자금은 대한민국정부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과 기타 상호 합의하는 제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된다. 이것은 대충자금을 재정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1950년대 미국의 원조물자에 의한 대충자금의 특별회계수입 지출을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대충자금 특별회계수입 지출 명세서 (1953.12~1958.7.31.)[69]

COMBINED ECONOMIC BOARD
United Nations Command - Republic of Korea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

CEB-P-58-397
CEBFIN

August 19, 1958

THE DETAILS OF THE COUNTERPART FUND AND COLLECTION ACCOUNT
대충자금 특별회계 수입 지출 명세서
Sub-Account I C A
아이.씨.에이 계좌
From the beginning (Dec. 1953)
1958년 7월 31일
as of 31 July 1958
(In thousand of Hwan)
(단위 : 천환)

Explanation 적요	cumulative previous month 전월누계	this month 금월계	Cumulative this month 금월누계
Counterpart Fund Deposited 적립금 계정	355,147,053	-0-	355,147,053
Disbursements Total 지출 총액	243,189,045	16,237,274	259,426,319
5% Local Expenses 현정 제비	3,380,498	-0-	3,380,498
National Defense a/c 국방비 특별회계	25,862,755	-0-	25,862,755
Economic Recon. a/c 경제 부흥 특별회계	166,896,938	3,101,547	169,998,485
Handling Charges 물자 취급비	5,786,408	80,295	5,866,703
OSROK a/c (Relief) 외자 특별회계	3,009,032	-0-	3,009,032
Loan to Transportation a/c 교통 특별회계에 융자	4,354,671	-0-	4,354,671
Loan to Communication a/c 통신 특별회계에 융자	211,191	-0-	211,191
Loan to Monopoly a/c 전매 특별회계에 융자	-0-	-0-	-0-
Loan to BOK 한은에 융자	1,700,000	-0-	1,700,000
Loan to KAB 농은에 융자	3,945,000	- 0-	3,945,000
KRB Loan 민간융자	27,887,503	13,055,432	40,942,935
Reduction for Refund 변상금	155,049	-0-	155,049
Balance of Counterpart Fund 대충자금 잔액	111,958,008	-16,237,274	95,720,734
Collection a/c 징수 계정			
Proceeds of Aid Goods Total 원조물자 판매 수입	324,272,634	15,996,762	340,269,396
Office of Supply 외자청	59,040,735	627,924	59,668,659
Bank of Korea 한국은행	156,345,219	3,334,166	159,679,385
Finance Bureau 이재국	85,963,503	12,034,672	97,998,175
Fertilizer (KAB) 비료 (농은)	15,263,000	-0-	15,263,000
Fertilizer (Grain a/c) 비료 (곡물 계정)	7,755,128	-0-	7,755,128
Reduction for Refund 변상금	-94,951	-0-	-94,951
Repayment of Overdrafts 상 환	243,189,045	16,237,274	259,426,319
Balance of Collection a/c 징수 계정 잔액	81,083,589	-240,512	80,843,077

Prepared by Finance Bureau
Ministry of Finance, ROK
재무부 이재국 작성.

출처: CEB-P-58-397, RG 469, Office of the Controller, Counterpart Funds Section, Entry # 1277A, Box. No. 2

1950년대 전반 합경위 회의록을 보면 합경위가 전후 구호와 재건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한국 측의 경제부흥을 위한 투자제안 승낙을 꺼렸다. 1952년 8월 5일자 제2차 합경위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이교선이 니트로 비료공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한 반면에 유엔 측은 현재 공장 같은 사업에 가용한 미국 자금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게다가 공장 같은 단일적 프로젝트보다 전반적인 통합적 계획을 세우는 게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70 (CEBORC-Min-52-2)] 한국정부가 경제부흥을 꾀하는 목적이 있으니 대충 자금을 투자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음을 원하였다. 이는 1955 회계 연도 FOA원조운영프로그램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기획위원회 Albert Boucher와 원영숙 간의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 잘 나타났다. 한국정부는 석탄이 국내 더 싼 석탄을 이용하여 석탄에 의한 지출이 6.6백만 달러로 줄이려고 하였다. 비료가 예상했던 750,000톤에서 614,000톤으로 줄여 9.6백만 불만 책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80백만 불 원조에 더해 원면을 비롯한 55백만 달러 잉여농산물을 우와싱턴(Washington)한테 요청하였다. 즉 이 요청이 승인되면 FOA원조프로그램에서 밀과 원면을 뺄 수 있고 한국정부가 이와의 상당금액을 다른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비재 원조물자를 줄이려는 반면 소규모 산업프로젝트에 대해 유엔 측이 제시했던 2백만 달러가 아니 한국정부가 10백만 달러로 인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한국정부가 28백만 달러로 하고자 하였으며 석유정제공장까지 제안하였다.[71 (CEBORC-Min-52-2)]

제 36차 회의에서 재정위원회 의장 (CEBFIN Chairman) 초나 (Lowell J. Chawner) 박사가 금년의 최종 4반기에 150억 환의 등반은 절

대적 통화의 최대량이라고 간주된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11월의 통화발행고는 작년 동월의 통화발행고에 비해 훨씬 더 많다고 하며 여신 한계를 유지하려면 동 4반기의 남은 기간에 대부를 극도로 제한하고 융자연체금의 많은 상환을 촉진시킴이 필요할 것 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엔 측 대표는 한국정부의 노력은 인플레 경향을 억제하여 물가지수는 1955.9 / 1956.11 사이에 10%만 성장했을 뿐, 즉 지난 해 동기간의 1/5 , 그리고 그 전 해 동 기간의 1/7로 나온 정도로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금년의 미곡 흉작으로 인해서 보수적 금융정책을 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방법을 계속 채택하여 악성 인플레를 방지하며 특히 시급한 장래를 위해 은행예신의 확장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진술하였다.[72]

이렇게 반인플레정책이 철저하게 실행되었는데도 "1955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25% 이하로 유지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1957년 4월 20일자 제 52차 회의에서 합경위가 재정안정화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였고 이 프로그램의 지침은 1957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순통화팽창을 더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진행하는 것은 재정 및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데 주목할 만할 진전을 희망한다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제안을 계획실행조사단 (Implementation Review Group)으로 한 재정위원회 (CEBFIN)에게 위탁하여 재정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한 추천을 다음 회의 때 제출하라고 제시하였다." [73] (CEB-Min-57-15) 이어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재정안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고 매달 본회의에서 재정안정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하고 발표되

었다.[74] (CEB-Min-57-52)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인 통화 순팽창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하여 재정안정화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했다. 1957년 합경위는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획실행조사단을 본격적 임명하는 것을 통과하고 본 계획에서 결정된 연차계획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내용을 점검하기로 했다.[75]

합경위는 각 부문별 재정금융계획에 따라서 한국정부 예산에 대한 건의, 대충자금 및 기타원조재원, 금융활동 및 기타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였다. 한국정부 예산에 대한 계획은 (1) 일반회계, 국방비특별회계 및 국채금특별회계 (General, National Bond and National Defense Accounts), (2) 양곡관리특별회계 (Grain Control Special Account), (3)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 및 한국산업은행융자 (Rehabilitation Bonds Accounts and Related Reconstruction Bank Loans), (4) 기타 예산 (Other Budget Accounts)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합경위에서 통과된 1957년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의 일반회계, 국방비특별회계 및 국채금특별회계 등에 관해서 첫째, 정부가 일반회계 및 국채금특별회계에 포함된 세입예정액의 유지와 징수를 위하여 최대를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세출재원조달에 있어 한국은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일반회계, 국방비특별회계, 국채금특별회계 당초예산 세출액 총액에서 100억 환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외국원조수입을 제외하고 총적자는 472억 환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적자로 인해 이 정도의 통화량 순증가가 예상된다

는 것이다 <표 6> 참조).[76]

<표 6> 한국정부의 일반회계, 국방비특별회계 및 국채금특별회계 현황 (1957년)

Financial Stabilization Program, 1957
Status of Implementation, Paragraph A, 1, CEB-P-57-110
General, National Bond, & National Defense Accounts
(In millions of Hwan)

	1957 Program	Actual Implementation: Jan-May	Jan-March	April	May (Pr)
A. FY 1956 Budget, Carried Forward:					
1. General Account, net		2,977	2,977	-	-
2. National Defense Account, net		-7,002	-7,002	-	-
3. National Bond Account, net		1,040	1,040	-	-
4. Monopoly Revenues, net		-183	-183	-	-
5. Lottery Revenues, net		-14	-14	-	-
6. Net Deficit (-)	-4,600	-3,182	-3,182	-	-
B. FY 1957 Budget:					
1. General Account, Expenditures	(95,000)	29,680	12,866	7,278	9,536
2. National Defense Account, Expenditures	(109,000)	36,424	21,384	8,873	6,167
3. Total Expenditures	(204,000)	66,104	34,250	16,151	15,703
4. General Account, Revenues	(128,197)	32,099	14,259	9,639	8,201
5. National Defense Account, Revenues	-	140	-	-	140
6. National Bond Account, net	(10,988)	3,167	530	1,540	1,097
7. Monopoly Revenues, net	(16,200)	9,794	4,486	3,128	2,180
8. Lottery Revenues, net	(1,000)	25	5	1	19
9. Total Revenues	(156,385)	45,225	19,280	14,308	11,637
10. Net Deficit (-)	-42,600	-20,879	-14,970	-1,843	-4,066
C. National Bonds Purchased by Banks (-)	-	-937	-734	-178	-25
D. Net Surplus or Deficit (-)	-47,200	-24,998	-18,886	-2,021	-4,091

NOTE: Bracketed data for the FY 1957 budgetary program represent the annual budget, a portion of which (5.3 billion hwan deficit, net) is to be implemented in 1958.

출처: RG 469, Office of the Controller, Counterpart Funds Section, Entry # 1277A, Box. No. 3, Financial Stabilization FY 1958

양곡관리특별회계 (<표 7> 참조)는 양곡구입과 양곡특별회계의 영농자금 대부의 자금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식량관리특별회계는 농업은행을 통해서 ICA비료공급에 대한 현금 또는 물납으로서의 대출금 상환으로 채권을 신속히 청산한 것으로 규정된다. 농업은행의 대부 회수금으로서 조달되는 양곡징수대금과 구입대금의 융자는 1957년 잔액에 포함된 영농자금의 확정된 순회수액으로 충당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양곡특별회계는 1957년 중에는 순재정적자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순재정적자가 발생해도 그것은 순대부회수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77]

<표 7> 양곡관리특별회계 (1957년)

Financial Stabilization Program, 1957
Status of Implementation, Paragraph A, 2, CEB-P-57-110
Grain Control Special Account
(in millions of hwan)

	1957 Program	Actual Implementation Jan. May	Jan-March	April	May (pr)
Grain Control Special Account:					
1. FY 56 Budget, net	-	3,141	3,141	-	-
2. FY 57 Budget					
a. Loans to KAB		-	-	-	-
b. Other Expenditures		26,740	13,088	4,695	8,957
c. Total Expenditures		26,740	13,088	4,695	8,957
d. Total Revenues		31,615	12,495	6,760	12,360
e. Net Surplus or Deficit (-)		4,875	-593	2,065	3,403
3. Net, FY 56 and 57 Budgets		8,016	2,548	2,065	3,403
4. Deficit Offset by Net KAB Loan Retirements		-	-	-	-
5. Net Surplus or Deficit (-)	-	8,016	2,548	2,065	3,403

출처: RG 469, Office of the Controller, Counterpart Funds Section, Entry # 1277A, Box. No. 3, Financial Stabilization FY 1958

산업부흥국채 특별회계 및 산업은행 융자 (<표 8> 참조)는 수리사업에 대한 융자는 산업부흥국채의 대충자금에 의한 구입액에 의하거나 대충자금이 확보되어서 산업부흥국채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되거나 그 외에 수리사업에 융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융자하고, 산업은행 융자는 민간정기예금, 대출금 상환, 대충자금 차입금, 민간소화 산업금융채권액, 귀속재산판매대금에서 염출된 정부차입금 등의 재원으로만 허용한다.[78]

<표 8> 산업부흥국채 특별회계 및 산업은행 융자 (1957년)

Financial Stabilization Program, 1957
Status of Implementation, Paragraph A, 3, CEB-P-57-110
Rehabilitation Bonds Account & Related Reconstruction Bank Loans
(in millions of hwan)

	1957 Program	Actual Implementation January-May	January-March	April	May
A. Rehabilitation Bonds Account:					
1. FY 56 Budget, net		-	-	-	-
2. FY 57 Budget, net		1,478	559	200	719
3. Net, FY 56 and 57 Budgets		1,478	559	200	719
B. Korean Reconstruction Bank Loans:					
1. Irrigation Loans Made After April 1:					
a. Loans Extended, net	(6,500)	-	-	-	-
b. Loans Offset by Counterpart	(6,500)	-	-	-	-
c. Net Surplus or Deficit (-)	-	-	-	-	-
2. Other Loans (excluding programmed projects):					
a. Irrigation Loans Made Before April 1, net		3,800	3,800	-	-
b. Other Loans, net		6,845	5,656	485	704
c. Net Loans		10,645	9,456	485	704
d. Less: Commercial Bank Loans Refinanced by KRB		4,231	3,866	365	-
e. Net Loans, Adjusted		6,414	5,590	120	704
3. Net KRB Loans		6,414	5,590	120	704
C. Means of Financing:					
1. Private Time Deposits at KRB		- 26	40	- 2	- 64
2. Borrowed from Vested Property Proceeds		-	-	-	-
3. Debentures sold to the Public		-	-	-	-
4. Total Means of Financing		- 26	40	- 2	- 64
D. Surplus or Deficit (-) A-B+C		-4,962	-4,991	78	- 49
E. Deficit Offset by Counterpart Earmarks		-	-	-	-
F. Net Surplus or Deficit (-)	-	-4,962	-4,991	78	- 49

출처: RG 469, Office of the Controller, Counterpart Funds Section, Entry # 1277A, Box. No. 3, Financial Stabilization FY 1958

금융활동은 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의 운용에서 나타나는 순통화 팽창에 비추어 1956년 12월 31일 이후의 신규대출은 민간정기예금, 대출금의 상환, 대충자금으로부터 차입, 위에 규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와 귀속재산판매액에 의한 정부차입에서 은행이 획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었다. 1957년 금융활동으로 말미암은 순통화팽창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고 대출의 확정적인 회수는 정부양곡구입에 직간접으로 융자된 대출금의 상황이 있을 때와 산업은행의 보증 하에 있는 1956년 말 현재 시중은행 대출을 산업은행이 재융자할 때 이루어진다. 1957년에 적립되는 대충자금과 기타물자판매대금은 사업계획을 완수하고 위에서 규정한 재정흑자를 조출하는데 필요한 총금액을 초과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순신용팽창은 한.미 경제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한국은행의 외환매매를 포함하는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기타요인에 대해서는 그 요인의 통화팽창에 대한 효과를 중화시켜야 할 것이다 (<표 9> 참조).[79]

<표 9> 산업은행외의 금융활동 (1957년)

Financial Stabilization Program, 1957
Status of Implementation, Paragraph C, CEB-P-57-110
Banking Activities
(in millions of hwan)

	1957 Program	Actual Implementation January-May	January-March	April	May (pr)
A. Bank of Korea, Private Loans, net	-	- 139	- 125	- 1	- 13
B. Agricultural Bank:					
1. Loans Extended					
a. Total Loans		2,567	253	1,749	565
b. Less: Fertilizer Loans		416	-	-	416
c. Net Loans, excluding fertilizer loans		2,151	253	1,749	149
2. Means of Financing:					
a. Private Time Deposits		- 531	- 191	- 264	- 76
b. Borrowed from Vested Property Account		-	-	-	-
c. Borrowed from Grain Control Account		-	-	-	-
d. Total Means of Financing		- 531	- 191	- 264	- 76
3. Surplus or Deficit (-), 2-1		-2,682	- 444	-2,013	- 225
4. Surplus Applied to Offset Grain Control Deficit		-	-	-	-
5. Net Surplus or Deficit (-), 3-4		-2,682	- 444	-2,013	- 225
C. Commercial Banks:					
1. Loans Extended					
a. Total Loans		-1,073	-2,029	995	- 39
b. Plus: KRB Refinancing		4,231	3,866	365	-
c. Net Loans		3,158	1,837	1,360	- 39
2. Means of Financing					
a. Private Time Deposits		-2,209	-1,875	- 77	- 257
b. Borrowed from Vested Property Account		-	-	-	-
c. Total Means of Financing		-2,209	-1,875	- 77	- 257
3. Net Surplus or Deficit (-), 2-1	-	-5,367	-3,712	-1,437	- 218
D. Net Surplus or Deficit (-), B+C-A	-	-7,910	-4,031	-3,449	- 430

출처: RG 469, Office of the Controller, Counterpart Funds Section, Entry # 1277A, Box. No. 3, Financial Stabilization FY 1958

그 외에 외화특별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순차입금은 7억 환을 초과하면 안 되며,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의 융자와 기타 지출은 1957년 현금세입을 초과하면 안 되고, 교통사업, 체신사업과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순차입 회수액은 4억 환으로 예측하고 있고, 기타 예산은 1957년 중에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현금계정 잔액은 1956년 말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결정한다. 그러면 경제원조물자에 의한 대충자금은 재정금융안정화프로그램에 어떠한 역할을 행했을까?

대충자금과 기타 원조재원은 대충자금의 징수액과 원조물자에 의한 판매대금은 약 1,070억 환으로 잡고, 군방위예산원조를 제외하여 사업계획과 기타 지출을 위한 현금소요액은 행정제비 7억 환, 구호식량계획 35억 환, 수리대부 65억 환으로 735억 환, 사업계획 628억 환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소요자금은 이미 계획된 것으로 이 금액 이하의 대충자금의 방출은 합경위에 의해 관리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대충자금의 실질적 지출과 계획집행부처에 의한 현금경비는 대충자금에서 현금흑자가 나도록 하기 위하여 적어도 원조 이전의 일반회계, 국채특별회계, 국방비특별회계 및 기타계정에 내포된 순 적자와 같아질 때까지 관리되어야 한다. 1957년 중에 추가원조가 유효하게 되고, 비료공급과 기타 물품판매, 그리고 민간투자계획에 의한 대금징수가 추정액을 초과하면 위의 사업계획은 이와 같이 증가된 원조물자판매대금의 징수금을 사용하므로 더 큰 규모로 완전하게 수행한다. 원칙적으로 1957년 말 현재의 대충자금징수액과 물자판매대금, 그리고 사업계획의 세 현금잔고는 1956년 말 현재의 잔고보다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 국방비 예산의 자금조치는 1956년 말 현재의 이들

계정의 잔액초과를 포함하여 PL 480과 ICA 402조 규정에 의한 원조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 10> 참조).[80]

<표 10> 대충자금 및 기타 원조 (1957년)

Financial Stabilization Program, 1957
Status of Implementation, Paragraph B, CEB-P-57-110
Counterpart & Other Aid Resources
(in millions of hwan)

	1957 Program	Actual Implementation January-May	January-March	April	May
A. Current Collections (net):					
1. ICA Sales Proceeds	(62,100)	45,597	29,883	12,126	3,588
2. Sec.402 Proceeds, FY 56	4,500	2,808	1,347	799	662
3. Sec.402 Proceeds, FY 57	22,500	10,986	5,699	2,427	2,860
4. P.L.480, FY 56 (ROK Portion)	10,900	7,333	370	728	6,235
5. P.L.480, FY 57 (ROK Portion)	7,000	72	-	-	72
6. Subtotal		66,797	37,299	16,081	13,417
7. Less: KAB Fertilizer Loans		416	-	360	56
8. Subtotal, adjusted	107,000	66,381	37,299	15,721	13,361
9. CRIK		22	12	5	5
10. UNKRA		486	326	49	111
11. Net Current Collections		66,889	37,637	15,775	13,477
B. Project and Other Expenses (excluding military):					
1. Counterpart Withdrawals					
a. ICA: Projects	62,750	25,853	8,528	9,114	8,211
Administrative Costs	750	-	-	-	-
Relief Grains	3,500	-	-	-	-
Total	67,000	25,853	8,528	9,114	8,211
b. CRIK:		-	-	-	-
c. UNKRA:		1,027	710	30	287
d. Total Withdrawals		26,880	9,238	9,144	8,498
2. Offsets to KRB Irrigation	(6,500)	-	-	-	-
3. Offsets to Other KRB Loans		-	-	-	-
4. Offsets to Other Bank Loans		-	-	-	-
5. Total Counterpart Withdrawals & Offsets	(73,500)	26,880	9,238	9,144	8,498
6. Less: Counterpart Withdrawals not yet expended					
a. Unexpended Balance, Econ. Rehab. Acct.		5,552	-2,270	5,375	2,447
b. Unexpended Balance, KRB		429	336	- 7	100
c. Total Deductions	(14,000)	5,981	-1,934	5,368	2,547
7. Net Expenditures, Project & Other Expenses (5 - 6)	59,500	20,899	11,172	3,776	5,951
C. Net Current Surplus (A - B):	47,500	45,990	26,465	11,999	7,526

출처: RG 469, Office of the Controller, Counterpart Funds Section, Entry # 1277A, Box. No. 3, Financial Stabilization FY 1958

이 재정금융안정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재정부문에서 국방비와 재정투융자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차입 억제 및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의 징수 촉진 등을 통하여 통화량 감축에 노력하였다. 금융부문에서도 일반금융기관의 여신증가를 저축성예금 범위내로 억제하는 동시에 대출최고한도제와 융자사전승인제를 계속 실시하여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였다. 이러한 경제안정화정책의 결과로 1958년에는 광복 후 처음으로 서울도매물가가 하락하게 되었다.[81]

최초 재정안정화프로그램협약은 1957년 4월 15일 합경위로 인해 완결되었고 제한적 국내지출을 수입으로, 대여금을 저축금 축적으로, 대충자금 투자를 대충자금 징수로 등 기존적인 목적을 일환으로 연간 전반적인 재정계획을 제공한다. 이 규칙에 철저하게 따라서 1957년 7월 3일자 제 64차 회의에서 3분기 재정계획을 작성하는데 유엔 측의 대표자가 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고 의지를 표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 측이 수리 프로그램에 6백5만 달러를 대충자금에서 방출 요청했는데 유엔 측 대표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을 고민하여 한국 측의 건의를 거절하였다.[82 (CEB-Min-57-27)]

그리고 1957년 대충자금징수계정에 축적된 잔액을 방출이 가능할 자금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합경위가 재정안정보조계정(stabilization sub-account)을 한국은행에서 생성하였다. 이러한 계정을 만드는 유일한 목적은 대충자금징수계정의 보조계정으로서 재정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며 합경위의 지시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예입시킴으로써 관리하는 것이었다. 합경위 승인에 의해 보조계정에 있는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충자금징수계정으로 반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합경위가 1956년 12월 29일까지 ICA 대충자금징수계정에 있는 잔액 14,476,959,000환을 안정보조계정으로 전입시켰다.[83] (CEB-P-57-205) 이어서 1958 년에 중앙은행재정에 대한 인상을 상쇄시키기 위해 190억 환을 안정보조계정에다 계속 이전되었다(<표 11> 참조). 실은 이러한 대충자금 동결은 1957년 대출자금 지출을 줄어들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지출에 대한 요구가 당해 계획된 통화공급량에 닿으면 안정보조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이 더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통화팽창에 필요한 브레이크를 제공해 준 것이다.

<표 11> ICA대충자금징수계정의 재정안정보조계정의 현황 (1958년 월 14일까지)

COMBINED ECONOMIC BOARD
United Nations Command - Republic of Korea

CEB-P-58-18 - Finalized January 15, 1958 January 14, 1958

Status of the Stabilization Sub-Account of the ICA Collection Account

A. Transferred from the Operational Sub-Account

	Amount	Reference CEB Paper	CEB Finalized Date	Remarks
1.	H₩ 14,476,959,000	P-57-205	29 May 1957	The balance in the ICA Collection A/C as of Dec. 29, 1956
2.	1,847,900,000	P-57-208	"	KRB Loans to DHCC, KEPCO, SKECO, SECO.
3.	7,703,000,000	P-57-339a	21 Aug. 1957	Fertilizer receipt loan of KAB
4.	202,282,262	P-57-340	7 Aug. 1957	KRB Loan for Hwa-chon Project
5.	1,000,000,000	P-57-337	"	BOK Loan to the Provincial Gov'ts.
6.	2,000,000,000	"	"	KRB Loan for Irrigation
7.	3,000,000,000	P-57-517	11 Dec. 1957	KAB Grain Loan for the month of November 1957
8.	3,000,000,000	P-57-530a	16 Dec. 1957	KAB Grain Loan for the month of December 1957
9.	2,500,000,000	P-58-6	8 Jan. 1958	KAB Grain Loan for the month of January 1958

Total 35,730,141,262.....Latest Balance of the Stabilization Sub-Account.

B. Retransferred to the Operational Sub-Account. 1/

1/ Provincial Government repayment for the BOK loan (Reference CEB-P-57-337) H₩ 700 million (Outstanding loan of H₩ 300 million will be paid back by 28 February 1958. As of that date, the full H₩ 1,000,000,000 for this item can be retransferred to the Operational Sub-Account).

출처: CEB-Min-58-2,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3.

재정안정프로그램이 매 회계연도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다. 1958년 3월 초 합경위가 1958년도 재정안정화프로그램을 통과하였다. 1958년도 동의된 통화팽창 제한설을 제급하는 준비공문서를 1957년 12월 말 완결되었다. 이에 따라 1,350억 환은 1958년 6월까지 최대한 통화지출을 인정되고, 그 후 9월까지 통화 공급량이 1,380억 환으로 연말까지 1,460억 환으로 결정되었다. 한국정부가 다시 한 번 자금지출이 현금세입보다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대충자금적립계정이 비인플레인 상태를 유지하고 상업은행들이 1958년 1월 1일의 신용팽창한도에 닿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였다.[84]

그리고 대충자금에 있어 계획되던 사업에 관한 대충자금계정에서의 추가 방출이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아야 진행될 수 있다. 합경위가 대충자금계정이 월간 재정안정화프로그램에 가용한 편의하고 신축성이 있는 장치라고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 예산균형에 있어 분기마다 재정부족이 피하기 위해 원조물자에 의한 판매대금 징수를 최대화하는 모든 노력을 가하였다. 그리고 한국재건은행, 농업은행, 상업은행 등의 활동에 있어 대여로서 방출할 대충자금이 물가안정에 위태롭게 하지 않은 한정된 한도에서만 허용한다고 1958년 재정안정프로그램을 세웠다.[85] (CEB-P-58-89)

1958년 10월 26일자 제 129차 회의에서 Henry K. Heuser 박사가 가격추세가 약간 하락되었지만 이것은 오래 유지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발전이 아니라고 한다. 내 년 초 가격을 상승하게 할 압력이 없어도 가격이 상승할 추세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이 절박하고 합경위에게 통화량이 거의 연말까지 허락한 지수에 가까이 달하

고 있고 이 지수가 쌀담보권프로그램이 (Rice Lien Program) 진행하기 전 또한 재건은행과 상업은행이 정확한 신용계획이 수여하기 전, 유엔 달러 매입을 진행하기 전의 지수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인상할 통화량을 예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그는 지난 3월 1958회계 연도 재정안정프로그램에 따라 유엔사령부로부터 구매한 달러를 판매하기로 하였다고 합경위에게 보고하였다. 그가 한국경제에 즉시 흡수될 수 없는 현금에 대한 절박한 인상을 대항하는 조치에 이 정도의 판매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가 합경위가 지난 몇 주 동안 약간 감소된 가격의 정확하지 않은 안전에 안심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다.[86 (CEB-Min-58-10)]

1958년 11월 6일 제 127차 회의에서 합경위가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 마땅치 않은 통화팽창을 예방하기 위해 총 통화 공급량이 당해 초기 수준인 18%를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하였다. 통화유통량인상이 제한 안에서 통제하기 위해 추가 수입품의 충분한 양은 한국정부의 외환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충자금 지출이 계획대로 유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하고 또한 결정된 바와 함께 통화팽창을 억제에 가용한 다른 수단도 이용한다고 단정히 결심하였다. 이런 초지들이 불충분한 경우 통화량을 결정된 한도 안에서 유지하도록 지출을 저지시킬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결국 1958년 12월 3일 가장 높은 1조 환 통화 공급량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정부가 13.5백만 달러를 방출하기로 하였다.[87 (CEB-Min-58-39)]

이어서 1959 회계연도 합경위가 재정안정화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의지가 변하지 않고 지출이 협약된 수준을 파기하지 않도록 과학적.

경제적. 효과적 실시하기로 하였다.[88 (CEB-Min-59-17)] 이에 따라 정부가 1959년에 들어서 임시외환특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등을 신설하고 일부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한국은행 인수에 의한 산업부흥국채 발행을 중단하여 재정적자를 적극적으로 축소하였다.[89] 1959 회계 연도 재정안정프로그램의 결과는 통화 공급량이 2,200억 환으로 협약되었는데 실제로 2,099억 환만 방출되어 계획된 기준보다 9%로 덜 지출하며 1958년보다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에서 ICA 원조프로그램이 도입될 때부터 처음으로 대충자금징수계정이 대충자금현금방출보다 34억 환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1959년 회계 연도 대충자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 동안 대충자금에 의존하는 프로젝트 운영지출과 다른 지출이 징수된 대충자금에 뒤떨어지었으니까 인플레 압력을 풀렸다. 이러한 반인플레 현상이 1959 회계 연도에 처음으로 나타났다.[90 (CEB-P-60-75)] 1959년 3월 25일자 제 148 차 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가 합경위가 진행한 활동 중에 현재 셋째 해가 된 안정프로그램만큼 중요한 활동이 없었다. 안정프로그램이 한국정부의 재정, 회계정책을 현명하게 유지하였고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하다고 하며 한국이 인플레를 피할 수 있는 수가 적은 나라들과 같이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뿌듯한 마음을 표하였다.[91 (CEB-Min-59-14)]

1960년 미국 측 대표인 John Heilman이 재정안정프로그램이 한국경제부흥에 중요성을 강구하였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내지 못하면 한국이 또 다시 악성 인플레이션 (runaway inflation)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합경위가 1960 회계 연도 통화 공급량이 2,300억 환 제한선

안에서 유지하도록 결정하였다.[92] (CEB-Min-60-31)

1961년 1월 31일 합경위의 제 219차 거의 마지막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4.19혁명과 쿠데타를 비롯한 여러 변화가 생긴 상황에서 지난 해 3월 협약된 재정안정프로그램에 대해 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we should not concern ourselves so much with the present agreement)는 방심된 입장을 표한 반면에 미국 측이 재정 안정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은 최대한 중요성 (of the utmost importance)이 있다고 답변하였다.[93] (CEB-Min-61-2)

합경위의 회의록에서 잘 나타나듯이 합경위가 1957년부터 재정안정화프로그램에 관한 주간보고, 월간보고, 분기별 보고, 년간 보고 등 실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 계획은 1957년부터 1960년까지 매년 수립되어 시행되었고, 1961년 군사정변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1963년 1월에 재정안정계획이란 이름으로 재도입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1950년대에 걸쳐서 미국이 한국경제안정을 최고 과제로 삼아 우선순위에 있는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항시 실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다.

제 2 절 1950년대 후반 대한경제원조정책 재검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50년대 미국에 의한 경제원조가 구호와 재건 등의 면목으로 한국에 도입되었는데 사실상 한국이 경제를 안정화시켜 방위력을 유지하는 것을 추구하는 미국이 합동경제위원회를 매개로 삼

아 원조물자 판매대금인 대충자금을 책정, 분배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국방비로 전용시켰다. 이것은 1950년대 미국 대한경제원조의 군사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미국이 스스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에 대한 군사적 목표를 성취하려면 필수적인 조건은 한국경제가 안정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1950년대 한국경제안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인플레이션을 궁극적으로 억제하는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끊임없이 촉진하였다. 이러한 대한경제원조 전개 자체가 바로 군사지원, 경제안정, 민간투자 등이 축이 되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1950년대 대한정책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지침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한국 현지 기관인 합동경제위원회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것을 더욱 명백하게 증명해 주었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원조정책에 대한 재검토 논의는 한국 현지의 실무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실체적으로 합경위에서 논의된 문제에 관련 문서를 보면 1950년대 전반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제부흥계획, 개발차관기금도입과 기술지원 강조 등 변화가 나타났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제 1 항 경제부흥에 대한 논의

1950년대 후반 이전 미국의 대한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미국의 대한원조가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한국정부의 비효율성과 비계획성에서 초래한 것이었다. 예컨대 1955년 주한 미대사 레이시 (Lacy)가 “한국에서의 광범위한 재건 노력의 세 번째 해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

나 부적절한 회계와 신용정책은 비참한 인플레를 양산하고 진취적 기상을 억누르고 정상적인 가격관계를 파괴하고 자본 형성을 방해하고 대체적인 생산의 진전을 마비시켜 왔다. 제도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두드러진 변화가 없다면 더 큰 규모의 원조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겠지만 원조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대한원조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94 (이현진, 2002)]

그런데 1950년대 후반 점점 한국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 변화가 생겼다. 대한원조행정의 실무책임자인 원 (William E. Warne) 경제조정관은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에서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한국의 자립을 위해서는 생산능력을 확장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하였다.[95 (이현진, 2002)]. 다울링 (Walter C. Dowling) 주한 미국 대사도 한국에서 경제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같은 지적을 하였다.[96 (Park Tae Gyun, 1999)]

1950년대 전반 합경위가 대한경제계획을 세울 때 일 년 단위로 단기계획을 설립하는 반면에 1950년대 후반 한국경제 개발을 위한 예전보다 "더 긴 계획" (longer-range plans for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다르게 말하자면 경제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대체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구호와 복구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1956년 이후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입안을 통한 성장문제로 관심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97 (박태균, 2007)]. 1956년 6월 27일자 제 14차 합경위 본회의에서 유엔 측 대표가 한국경제개발을 위한 "더

긴 계획"을 개발하는데 합경위의 구조를 더 효과적 이용하는 적합성을 고려하자는 의지를 표하였다. "더 긴 계획"이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에 대해 고려할 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원, 인구인상 예측, 재정정책, 무역관계 등을 포함시켜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98] (CEB-MIN-56-1). 이에 더해 1956년 제 15차 회의에서 유엔 측이 1957년 새로운 투자프로젝트 선정에 있어 고유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 완제수입품을 줄일 효과도 있으면서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투자를 장려하였다.[99] (CEB-Min-56-2)

현지 기관 미국실무자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장기경제계획 구성을 고취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957년 07월 10일 제 65차 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가 장기경제프로그램의회 (Long range economic program council) 설립을 언급하였고 합경위에 임명된 한국과 유엔 의회회장이 승인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필요로 하는 다른 성원들을 지정할 권한을 같이 부여된다는 건의를 하였다.[100] (CEB-Min-57-28) 1958년 산업개발센터가 설립되었고 기술서비스자문기관으로서 산업생산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었다. 합경위가 이러한 센터가 한국의 산업재건과 확대는 물론이고 한국경제부흥에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 24회 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가 중소기업하고 주택에다 더 많은 원조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UN측 대표가 실무그룹한테 1957 회계 연도 활동 프로그램에 추가할 아이템을 계획에 기업하고 2억8백만 불에 달하도록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게끔 지시하였다.[101] (CEB-Min-56-24) 이를 통해 1950년대 후반에는 예전과 달리 합경위에서 기간산업투자, 수출증대, 중소기업 투자 등 한국경제를 부흥시

키는 실천적 활동을 보였다.

더 현명한 변화는 1958년 한국 측 대표는 한국경제가 부흥계획에서 개발계획으로 전환하기에 적합한 단계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특히 작년 경제의 전반적인 안전과 생산증가에 현저한 진전을 한 바가 있음으로 지금은 경제개발방법과 범위에 관해서 어떤 근본 원칙을 수립할 적기라고 말하면서 모든 천연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연구를 하여야 하는데 즉, 경제개발을 위하여 과학적 연구를 하고 경제학자와 기술자로부터 건의를 받아 장래 계획을 현명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한 후 긴급하게 기본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수원, 광산, 토양개량 등의 수많은 분야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연간 계획과 장기 계획 간의 조정을 하여 기본원칙을 연구하고 건의해야 산업 개발위를 장려할 수 있는 합경위하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정부에서 정식제안이 제출될 시에, 여사한 계획에 동조 고려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측 의장은 기본적인 조사계획이라고 제안하는데 대하여 극히 동정하는 바라고 말하고 이는 경제 조정처 자신이 여사한 계획을 계획할 것이라고 주장할 입장이 아니고 한국정부 조사기관과 협조하여 여사한 계획에 대하여 관계임으로 하여금 가능한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후 이는 기본적인 조사심의를 극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과 여사한 계획을 수행하는데 계속적인 연락을 할 수 있는 경제개발위을 구성하자는 제의에 찬사를 표하였다. 또한 유엔 측 대표는 1959년도와 1960년도의 광범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할 것을 제안하고 합경위의 4개 분과 위원회가 금일 검토

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일련의 합경위 특별회의 의제를 작성할 합동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즉, 1) 차기 2년에 실행할 개발계획에 근본적 기준은 무엇인가? 불화 부족을 충당한다는 예측에 근거를 둘 것인가? 2) 원조 계획에 의하여 염출된 환화를 무엇에 우선 사용할 것인가? 3) 다음해에 필요한 대충자금과 전체운영계획을 심사의 필요성 등이라고 하고 합경위 특별회의에서는 장래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호간 만족한 근본문제를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그리고 한국 측 대표는 상기제의는 대단한 성과로 꼽으며 1959년도와 1960년도의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천연자원, 재정재원, 농업, 공업, 광업,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의 기본적인 검토가 행해져야 할 것인데 여사한 검토는 자금의 부당한 배정을 피하고 장차 한국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분야 비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 후, 현재한국에는 이전보다도 더 훌륭한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기술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경제육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잘 이용케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102 (CEB-Min-58-20)] 합경위의 한국 측과 유엔 측이 나눈 의견을 통해 한국 경제부흥에 대한 같은 입장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후반 합경위에서 한국 측은 물론 미국 측 실무자들이 한국의 경제부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정부가 1950년대 후반 경제부흥에 자유롭게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반인플레이션에 만족한 범위에서만 허용된 것이었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투자의 50% 이상은 원조나 해외 차입에 의존하고 있었고,[103 (박태균, 2007)] 1956년부터 1959년까지 한국정부 총세입의 각 해 46.5%, 52.9%, 51.5%, 41.5%를 대충자금에서 초래된 것이었다.[104 (이대근, 2002)] 한국경제부흥을 위해 대충자금이 커다란 자본원천이었다. 그런데 대충자금이 위에서 설명했듯이 1953년 12월 체결된 백.우드 협정에 따라 합경위를 통해 심사를 받고 승인받아야 방출될 수 있는 규칙이 있다.

<표 12> 국민저축과 해외저축의 구성비 단위 (%)

	총투자	투자의 자립도	대외의존도			통계상 불일치
			소계	원조	차입	
1953	100.0	59.0	41.0	30.9	10.8	-
1954	100.0	54.8	45.2	36.2	9.0	-
1955	100.0	41.1	58.9	47.2	11.0	-
1956	100.0	-14.4	114.4	122.3	-7.9	-
1957	100.0	36.1	63.9	63.6	0.3	-
1958	100.0	38.4	61.6	69.8	-8.2	-
1959	100.0	36.5	63.5	67.0	-3.5	-
1960	100.0	14.5	78.3	82.3	-4.0	7.2
1961	100.0	29.2	65.2	69.5	-4.3	5.6

출처: 박태균. 2007.「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의 경제부흥 전략」.『세계정치 8』. pp.2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경제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니까 반인플레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반면에 이승만 정부가 “각 공장을 세워 자급자족의 근원을 만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한국경제부흥에 필수적인 산업재건을 거듭 밝혔다.[105 (박태균, 2007)] 결국 한국정부가 투자를 위한 자금을 “자체조달”하겠다고 선언했고 산업재건을 위한 유일한 방

법은 통화를 팽창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런데 국민저축이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발행한 산업금융채 및 산업부흥채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켰다.[106 (박태균, 2009)]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측이 대충자금을 징수계정 (Counterpart Collection Account)에서 안정화보조계정으로 (Stabilization Sub-Account) 전입시키고 일시적 동결시키는 방법으로 조치하였다. 예를 들에 1957년 한국정부가 산업프로젝트 및 수리프로젝트를 출자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10억 환을 대부하고 한국재건은행에 의해 20억 환 산업 재건채를 발행하였다. 같은 해 7월 10일 제 65차 합경위 회의에서 대부금과 산업재건채의 팽창영향을 바로잡기 위해 대충자금징수계정에서 상응한 금액을 안정화보조계정으로 전입시키고 대부금이 상환될 때까지 대체전입 대충자금이 보조계정에서 남아 있도록 결정하였다.[107 (CEB-Min-57-28)]

1957년 전반프로그램에서 투자부문에 90백만 불만 승인되었지만 한국정부가 110백만 불로 20백만 불을 추가 요구하였다. 한국정부가 그 초과 금액을 진행하고 있는 펄프공장과 전원공장에 주로 쓰려고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유엔 측이 펄프공장에다 쓰는 1.1백만 불을 예외하고 남은 추가로 요구된 금액을 부결하였다. 합경위기 투자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할 적자가 국가예산에 큰 부담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융자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표하였다. 그래서 민간투자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한국경제발전에 유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권유하였다. [108 (CEB-Min-56-2)]

경제조정관 특별보좌관 Lowell J. Chawner 박사가 “전 세계의 경

험을 통해서 경제개발은 인플레이션으로 끝나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가 없는 것을 잘 보여줘서 우리가 통화 공급량에 의한 인플레이션 없이 재정 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 중에 이 위원회의 상세한 관심인 원조물자에 의한 판매대금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원조물자 판매에 대한 경쟁을 늘리면 시장에서의 징수금을 늘어날 것이다. (생략) 지난 몇 년 동안 물가가 40%~100% 상승할 장래의 관점에서 우리가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정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인상이 일어나면 프로그램을 삭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자금이 없기 때문이다."[109 (CEB-Min-58-9)]

1958년 10월 17일자 제 125차 회의에서 유엔사령부대표가 1959 회계 연도 방위지원자금으로서 2억 1백만 달러 금액을 배분되었고 기술 협력지원을 위한 5백8십만 달러도 허가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하였다. 방위 지원자금은 아직도 비계획 프로젝트와 계획프로젝트 간 어떻게 나누어질 건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문제는 안정프로그램의 지속성을 고민하여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110 (CEB-Min-58-37)]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배분할 때 한국경제안정은 기본적 기준이 되어 지배하는 요소이었다.

윗부분에서 나열된 합경위 회의에서 토론되고 실천된 사항을 보면 1950년대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은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을 반대하고 안정화정책을 하는데, 그러면서 경제부흥을 추진한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안정화정책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을 궁극적으로 억제하여야 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억제는 시장으로 흘러가는 통화 흐름을 절대적으로 막는데 달려 있

다. 그런데 한국경제를 부흥시키려면 그 당시 부흥에 필수적인 기간산업, 전원개발, 중소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반드시 방출해야 하는데 이 행동은 통화팽창을 도발하는 주원인이라고 합경위한테 비판되고 또 다시 대충자금을 안정계정에서 동결하거나 통화팽창 량을 정체시킬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였다. 결과적으로 1950년대 미국이 한국에서 경제안정화와 경제부흥 등 두 개를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으로 본다.

제 2 항 기술원조 강조 및 개발차관기금 (DLF) 도입

미국이 경제원조를 줄이면서도 한국의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비 삭감과 기술 원조프로그램의 증액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였다.[111 (이현진, 1999)] 그래서 1956년 9월 기술위원회가 합경위의 상임위원회로서 설립되었다. 기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통신, 산업, 광업, 전력, 공공행정, 농업, 수송 등 원조프로그램의 각 부문의 행정과 정책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을 책임지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는 원조프로그램의 투자부문 개발과 관련한 권고안의 작성, 한국정부와 국제협조처, 그 밖의 민간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경영기술 계약의 관리,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승인된 절차에 따라 기술자들에게 주어질 작업 훈령들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등의 특별 임무를 맡아 활동하였다.[112 (CEB-P-57-325)]

유엔 측 대표자가 기술원조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독일의 전후 재활에 있어서 기술개발과 운영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다고

전하였다.[113] (CEB-Min-59-18) 그리고 산업 확립과 연관하여 합경위가 역량이 있는 (competent)기술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합경위뿐만 아니라 우와싱턴 ICA도 한국과의 기술계약을 맺는데 관심이 있는 기술회사와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 소식이 전해 왔다.[114] (CEB-Min-56-1) 1956년 09월 26일 합경위가 신현확 상공부장관이 기술계약 입찰예비심사를 돕기 위해 미국으로 파견되었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115] (CEB-MIN-56-11) 이러다가 1950년대 말 주된 기술공여자로 "SH&G" (Smith, Hinchman and Grylls Associates)회사가 선정되었다. SH&G 계약은 1957년 1월 18일에 체결되었고 400억 환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는 일부터 발효하였다.[116] (CEBORC-Min-57-2) 그 외에 1958년 5월 전기통신 시스템을 재건. 개발에 필요한 기술. 운영 전문가 훈련에 대한 한국과 Philco Corporation 간 계약도 체결되었다.[117] (ICA-X-8)

1958년 개발차관기금이 등장할 당시 한국에서 기술원조 영역을 담당했던 것은 합경위 산하 기술위원회 (CEBEC)와 지역사회개발위원회 (CEBCOM)였다. 1958년 이후 기술위원회는 개발차관기금에 준하여 주로 한국의 기간산업에서 핵심이 되었던 전력과 원자력 문제의 실현 및 타당성, 그리고 한국의 소득개선에 도움이 될 여러 산업들에 관한 프로젝트, 이들을 연결할 운송 시스템 (철도연결 및 수리)등에 대한 프로젝트 등의 실현에 대한 점검을 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제 기술원조의 실현에서 자조나 인도주의적 측면에 대한 강조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기술원조는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기구인 "회사" 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기술자문회사는 DLF (Development Loan Fund, 개발

차관기금) 차관의 활용에 사업은 물론, 현지조사, 그리고 비용평가 합경위 산하 기술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전하였다.[118] (한봉석, 2015)

합경위가 한국에서 전반적인 한국 경제 분야에서의 기술원조계획을 자세히 수립하는데 기술자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 129회 합경위 회의에서 특별프로젝트운영부문의 실무자가 "대만으로 파견 예정할 이들(기술자)에게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현장에서 지도를 받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만약에 이 것을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이나 기술 조건에 충족한 제 3 국가로 기술자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계획을 토의하였다.[119] (CEB-Min-58-41) 1955년부터 1958년까지 기술훈련생으로 선정되어 해외에 파견된 인원은 총 1168명에 달했다. 이들은 농업 및 자연자원, 공업 및 광산, 운송, 보건 위생, 행정,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주택 등과 관련한 업무 종사자로 채워졌다.[120] (이현진, 2002)

하지만 기술원조 사업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고 활동과정에서 자문회사가 기술적 실수가 있었고 한국 측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1959년 1월 7일자 제135차 회의에서 기술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국 측 대표가 재건부에서 한국정부, OEC (Office of Economic Coordinator, 경제조정관실) 및 SH&G 간의 조정 실무그룹을 설립함으로써 서울에 있는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이것은 SH&G가 작성한 기술보고서에 대한 불미스러운 경험을 겪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정부가 충주수력발전소에 의한 차관신청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와싱턴 DLF에게 불적당한 정보를 제출한 것에 당황하였다. PVC공장에 관련 조사가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

다. 논의된 결과로서 기술자들의 실수와 오해를 정리되었고 SH&G가 이 주일 내내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지만 2 달이 지나서도 아무 정보를 받지 못 하였다. 게다가 소다회 공장 조사에 관련 한 미국 기술자가 그의 프로젝트에 의한 자금이 떨어졌다는 설명으로 1월 3일에 갑자기 떠났다. 한국 측 대표가 이런 미완성된 조사 포기 또한 완성된 조사에 대한 보고부족을 피할 수 있도록 SH&G 프로그램 운영을 향상시키는 것을 재촉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하였다.[121 (CEB- Min-59-1)]

다른 면으로 1950년대 후반 미국이 1950년대 전반과 달리 비교 못 할 정도로 한국에 의한 기술 원조를 강조하였지만 미국의 1950년대 대한원조정책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본질이 그대로 들어 났다. 1957년 기술지원은 5백만 달러가 배정되었고 한국에 있는 미션을 진행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이었다. 이 자금은 방위지원하고 기술지원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며 기술원조는 1백만 달러이며 방위지원은 4 백만 달러이라고 설명하였다. 기술지원은 다른 계정의 예금으로 계산하는 행정비용을 제외하고 아이시에이 (ICA)의 직원 급여 및 통행 지원, 현지인 급여, 미션에 관련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122 (CEB-Min-56-11)] 이러한 설명은 미국이 경제원조는 물론 기술원조도 한국방위력을 확대하는 목적에 중심을 두었다는 의미가 있다.

1950년대 미국이 해외활동처 (FOA,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와 그 후신인 국제협조처 (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를 통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기술원조가 제공되었음도 불구하고, 1957년에는 개발차관기금 (DLF, Development Loan Fund)이 설

립되어 한국을 비롯한 후진국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안을 무상원조(grant)의 형태가 아닌 차관 (loan)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재개발원조가 있었다. 1959년 1월 7일자 제 135차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첫째 DLF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가치가 2.14백만 불이었고 모든 차관이 삼촉공장 (Samchok Plant)의 연간 생산용량을 150,000 톤부터 300,000 톤까지 늘리도록 동양시멘트생산 회사 (Tongyang Cement Mfg. Co.)한테 수용되었다.[123 (CEB-Min-59-1)] 그리고 1959년 4월 29일 제 153차 회의에서 개발차관기금과 한국전력회사 (KEPCO) 간 계약이 체결되었다. 1.5백만 달라 차관은 남한강 상에 충주수력발전소를 설계하는 목적으로 출자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댐, 발전소, 배관라인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건설 및 공장 등에 관한 설계가 포함되었다.[124 (CEB Min-59-19)]

하지만 개발차관기금은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에 대한 원조를 담당하였는데 계획 자체가 많지 않았고, 심사과정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1950년대를 통해서 승인된 개발차관의 양은 얼마 되지 않았다.[125 (박태균, 2003)] 한국은 한국경제의 국가소득이 아주 낮고 이 레벨을 늘리고 실업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무상원조가 점차 줄이는 상황에서 DLF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수차례 합경위에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126 (CEB Min-58-37)] 1957년 11월만 되더라도 이미 우와싱턴에게 개발차관기금프로그램 신청서의 총 금액은 82백만[127 (CEB-Min-57-45)] 불이 된 반면에 1959까지 동양 시멘트 회사의 시멘트 공장 확대와 전력발전소 사업에 출자된 총 차관이 3.64백만 불밖에 안 되었다. 특히 1957년 12월 충주 수력발전소가 개발차관기금

요청 신청서 중에 최고 우선 프로젝트로서 삼았는데도 1961년이 돼서도 아직도 진행을 못 하고 계속 “고려중인 제안”이라고 오랫동안 표류되었다.[128 (CEB-Min-57-24)]

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의한 DLF차관을 신청하는 계획마다 DLF관리관에게 프로젝트에 관련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출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작업지시서 (Task order)를 진행하는데 굉장한 정부의 돈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합경위가 개발차관을 신청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기술조사를 요청하였다. 유엔사령부 대표자는 한국이 제급한 비용문제에 공감하지만 쌍방 지원프로그램 협약에 따라 민간투자를 유치, 촉진, 장려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것을 머릿속에 항상 둬야 한다고 강력히 표현하였다 .[129 (CEB-Min-57-14)] 이것은 미국의 개발차관기금은 민간자금을 유치해서 저개발국에게 차관을 제공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1950년대 미국의 경제개발원조는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았다. 우선 FOA, ICA, 그리고 개발차관기금 등 후진국 경제개발원조는 모두 군사적인 원조를 기본적인 성격으로 하는 MSA법 하에서 작동하였다. 따라서 모든 대외원조는 군사적, 안보적인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다. 1950년대 단일국가로서는 가장 거대한 규모의 경제 원조를 받고 있었던 한국의 경우에도 1959년까지 모든 대외원조가 유엔군사령부에 의해서 관장되었다. 또한 개발차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계속 민간투자에 고수한 의도가 잘 들어난다.

또 다른 변화는 합동경제위원회 내에서 지역사회개발위원회를 설

치할 것을 제안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기술원조 담당 차관을 파견하였고, 훈련소 설치 및 훈련용 물자비용을 부담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전개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130] (대한민국 부흥부, 1957) 이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농촌 지역을 현대화시키고자 하였다. 미국식 사회생활양식의 구축이 반공을 위한 최선의 무기라고 보았고, 이를 통해 미국식 생활양식, 즉 미국식 사회관과 가치관을 심으려고 한 것이었다. 결국 합경위가 1957년 11월 지역사회개발위원회를 창립하였다. 이의 목적은 농촌 사회를 개발하는 목적에 중심을 두고 정보제공, 농촌개량에 대한 한미 간 협조방식의 검토, 한국과 기타 국가에서의 자조활동에 관한 정보 모집,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훈련과 선전 및 물자들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131] (CEB-Min-57-44) 원조당국이 지역사회개발에 적극 개입한 이유는 원조 삭감에 따라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개발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제주도 사회개발훈련프로젝트가 1957년 5월에 합경위에서 통과되었다. 특히 1957년 06월 21일에 합경위 지시에 따라 지역사회개발 실무그룹이 정식적으로 구성되고 실무그룹의 주요 임무는 한국의 전 지역에서 이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 및 요구를 연구하는 것이었다.[132] (CEB-Min-57-31)

마지막으로 미국이 수출증대를 장려한 바가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한국의 경제안정유지 목적에 있었다. 1958년 10월 17일자 제 125차 회의에서 유엔사령부측 대표가 비계획 부문에 가는 압력을 줄여 주기 위해 한국정부가 쌀 수출에 대한 강력한 캠페인을 지도하고 이를 통해 얻을 외화로 방위지원 (Defense Support)자금으로 수입해야 될 물품들을 수입하는 것을 권장하였다.[133] (CEB-Min-58-37) 수출부흥위원회의 헌장에서 잘 보

여준 듯이 “위원회의 기본적인 직능은 재정안정화 및 합경위의 경제 목표를 감안하여 한국의 수출증가를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정도로 증가시킴으로써 한국의 지출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선택방안들을 합동경제위원회에게 제안한다”고 규정되었다.[134]

1958년 4월 14일자 제102차 회의에서 Mr. Berenson이 “미국의 MSA프로그램에 관련하여 한국이 일위의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그런데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한 점은 거대한 원조금액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에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도 경기후퇴라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고 실업에서 유래한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미래의 계획들이 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외국 국가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나라 경제를 최대한 향상시키는 것에 애쓰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외국투자를 장려하고 유치해야 되고 왜냐하면 장기 번영에 있어서 민간기업을 통해 달성한 것은 정부 도움을 통해 달성한 것보다 더 많이 건강한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경우 군사예산을 지속적 지원하는 것에 대해 더 물을 필요 없고 앞으로 감축될 미국 지원 금액에 대한 가능성을 잘 인식하는 것을 좋다고 덧붙였다.” [135 (CEB-Min-58-14)] 이 발표는 한국에서 기술원조 강조, 개발차관기금 도입, 수출증대 장려, 사회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경제부흥사업이 점차 진행되더라도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핵심이 되는 군사지원, 경제안정화, 민간투자 등 지침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1950년대 후반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이 본질적 변함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준 것이다.

제 5 장 결론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회의록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찾아냈다. 첫째,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대한경제원조의 군사적 성격이 잘 반영된 것이다. 둘째, 합경위의 활동기간동안 합경위회의 의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문제는 바로 반인플레이션 문제였다. 1950년대에 걸쳐서 한국경제안정은 미국한테 우선순위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반인플레이션 정책이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합경위 회의록 추적 작업을 통해 다른 중요한 점을 발견하였다. 1950년대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은 서로 적합하지 않은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반대하고 안정화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경제부흥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 서론에서 제시했던 1950년대 후반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이 변화되었느냐는 쟁점에 대한 해설을 찾을 수 있었다. 1950년대 후반 합경위 회의에서 한국경제부흥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측 현지 실무자한테도 관심을 받았고 합경위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토의대상이 되었다. 미국이 한국경제부흥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 기술 원조를 강조하였다. 동시에 1957년부터 무상원조 (aid)가 아닌 차관 (loan)베

이스 개발차관기금 (DLF)에 의한 투자자금신청도 시작하여 1950년대 말 개발차관기금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경제개발원조는 모두 군사적인 원조를 기본적인 성격으로 하는 MSA법 하에서 작동하였다. 따라서 모든 대외원조는 군사적, 안보적인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다. 더불어 경제부흥을 위해 부흥계획이 추진되더라도 경제안정을 위태롭게 하지 않은 한도에서만 허용된다. 게다가 미국정부가 경제개발자금을 형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치 및 장려를 계속 강구하였다. 즉 1950년대 전반이든 1950년대 후반이든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의 지침이 되는 군사지원, 경제안정화 및 민간투자 등에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1950년대 후반 미국의 대한경제원조를 곁으로 보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박태균이 주장한 것처럼 그것이 본질적인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연구자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합경위 회의록을 통해서 1950년대 후반기가 분명 전반기와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흥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950년대 후반기에 경제성장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다. 이것은 반인플레이션 계획이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가 어려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승만 정부의 정책이 미국의 정책과 대립되었던 것이 아니었는지를 합경위 회의록만 갖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자료를 충분히 탐색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다.

참고 문헌

1 이현진. 2000.「1950년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운영과 역할」.『한국민족운동사연구 48』. pp.386.

2 차철욱. 2003.「1950년대 미국의 대한 원조정책 변화와 이승만정권의 수출정책」.『지역과 역사』. 11호. pp.224.

3 도널드 스턴 맥도널드. 2001.『한미관계 20년사 (1945~1965년) 해방에서 자립까지』. 서울: 한울 아카데미. pp.7.

4 도널드 스턴 맥도널드. 2001. 앞의 책. pp.417.

5 Jung-En Woo. 1991. Race to the Swift: State and Finance in Korean Industrializ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69-72. (제목은 연구자가 번역함)

6 Park Tae Gyun. 1999. "Change in U.S. policy toward South Korea in the early 1960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23. pp. 94.

7 박태균. 2003.「1950년대 미국의 대아시아정책과 ECAFE」.『국제.지역연구』(서울대 국제대학원) Vol.12(2). pp.34.

8 Park Tae Gyun. 1999. 앞의 글. pp.110.

9 이현진. 2009.『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 ~1960』. 서울: 혜안. pp.217.

10 이대근. 2002. 「해방 후 - 1950년대의 경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pp. 271.

11 국제연합한국재건단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국제연합한국재건단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은 1950년 12월 1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410(V)호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일명 운크라 (UNKRA)라고 불리기도 하는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은 한국전쟁으로 붕괴된 한국경제를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재건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전쟁기간 동안에는 이용 가능한 항구와 운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인에 대한 긴급구호에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휴전이 체결된 이후였다. 이때부터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은 1958년 7월 1일 활동을 종료 할 때까지 한국의 산업·교통·통신시설의 복구와 주택·의료·교육시설의 개선사업에 주력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16.03.12.)

12 이대근. 2002. 앞의 책, pp. 277.

13 이현진. 2000. 앞의 글. pp. 387.

14 최상오. 1999.「경제안정의 지향과 한 미 간 환율논쟁 - 유엔군 대여금의 상환문제를 중심으로」.『경제사학』. Vol.26 , pp. 57.

15 이현진. 2009. 앞의 책. pp.126.

16 이현진. 2010.「1950년대 초 외환통제권에 관한 논의와 원조수용체제에 대한 구상 – 산업은행 설립과 '이플랜' 구상을 중심으로」.『사학연구』. 제99호. pp.347.

17 이현진. 2009. 앞의 책. pp.134.

18 박태균. 2007.『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p. 332.

19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6, Board Meeting Minutes, 1952–61.

20 Meyer Agreement, 1952.05.24. 제1조 2항, http://mofaweb.mofat.go.kr/inter_treaty_real.nsf/c3abb29db86750f649256ef7003be2cf/7ce48f04f2b5fc85492565ff0002d965?OpenDocument, (검색일 2016.05.16.).

21 Meyer Agreement, 1952.05.24., 제1조 3항, 앞의 출처와 같음 (검색일 2016.05.16.)

22 CEB–Minutes (Preliminary to Organization)–52–1,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

23 Basic Documents, 1952 - 1961 [Entry UD 1277DA], CEB, Overal Requirement Committee Charter, 1952.07.22.

24 이현진. 2009. 앞의 책. pp. 225.

25 Basic Documents, 1952 - 1961 [Entry UD 1277DA], CEB, Finance Committee Committee Charter, 1952.12.09.

26 RG 469, Foreign Country Offices, United States Operating Missions, Mission to Korea, Program Coordination Office, Combined Economic Board, Secretariat, Entry 1277DA, Basic Documents, 1952–61, CEB Basic Documents to Basic Documents–CEB, Box 1.

27 CEBORC–P–52–2–Agreed July 28, Basic Documents, 1952 - 1961 [Entry UD 1277DA], CEB, Overal Requirement Committee Charter, 1952.07.22.

28 CEB–P–57–499 Finalized November 27, 1957,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Charter, RG

469, Foreign Country Offices, United States Operating Missions, Mission to Korea, Program Coordination Office, Combined Economic Board, Secretariat, Entry 1277DA, Basic Documents, 1952-61, CEB Basic Documents to Basic Documents-CEB, Box 1.

29 CEB-Minutes-52-1-Agreed,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

30 이현진. 2010. 앞의 글. pp.225.

31 김정식. 2000.「미국의 한국 경제원조정책에 관한 연구(1945-1960)」.『한국동북아농촌』. 제15집. pp. 19.

32 이현진. 1999. 앞의 책. pp. 38.

33 김정식. 2000. 앞의 글. pp. 38.

34 박태균. 2007. 앞의 책. pp.117-118.

35 권오신. 2005.「아이젠하워 대외정책의 기조 - 뉴룩 (New Look)" 정책과 "아이젠하워 독트린"」.『한국미국사학회』 Vol.21. pp. 19.

36 Park Tae Gyun. 1999. 앞의 글. pp.96.

37 박태균. 2009.「잘못 끼운 첫 단추 - 이승만. 아이젠하워 정부의 갈등」.『특집 순응과 갈등의 한미관계 60년, 미래 지향의 대한을 찾아, 역사비평』. 봄호 (통권 86호). pp.96.

38 이현진. 2009. 앞의 책. pp.120

39 Meyer Agreement, 1952.05.24., 앞의 출처와 같음 (검색일 2016.05.16)

40 Meyer Agreement, 1952.05.24., 앞의 출처와 같음 (검색일 2016.05.16)

41 이현진. 2009. 앞의 책. pp.136.

42 CEB-P-52-1-Agreed July 3, Basic Documents, 1952 - 1961 [Entry UD 1277DA], UNC Proposal Standing Operating procedure for CEB, 1952.7.1.

43 신용옥. 2000.「1950년대 대충자금 및 미국 대한원조의 경제적 성격」.『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31. pp.232.

44 CEBORC-Min-55-8, 23 June, 1955, RG 469, Foreign Country Offices, United States Operating Missions, Mission to Korea, Overall Requirements Committee, Entry 1277OB, Meeting Minutes, 1952-60, CEBORC Minutes (1955 1-8) to CEBORC Minutes (1958 1-20), Box 1.

45 CEB-Min-57-31,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2.

46 CEB Min-59-1,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8.

47 신용옥. 1998.「국방비 분석으로 본 대충자금 및 미국 대한원조의 성격 (1954~1960)」.『한국사학보』. (3.4), pp.276.

48 미국의 농업수출진흥 및 원조법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약칭 PL 480):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가격을 유지하고 농산물 수출을 진흥하는 한편, 제3세계의 식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1954년에 이 원조법을 법제화하여 그 규정에 따라 잉여농산물 원조를 각국에 제공했다. 한국은 1955년 이 법의 제1조에 따라 협정을 체결, 1956 년부터 잉여농산물 원조를 받기 시작했으며, 1961년에는 국토건설사업을 위해 제2조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를 받은 적도 있으나, 1981년에 일단 종료되었다. (http://terms.naver.com, 검색일 2016.04.12.)

49 이대근. 2000. 앞의 책. pp.335-337.

50 CEB-Min-58-2,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3

51 이현진. 2009. 앞의 책. pp.50.

52 홍성유. 1962.『한국경제와 미국원조』. 박영사. pp.6.

53 CEB-Min-56-18,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

54 CEB-Min-58-43,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7.

55 CEB-Min-59-27,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0.

56 박태균. 2009. 앞의 글. pp.123.

57 최상오. 2003.「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공업화 전략」.『경제사학』. 제35호 (Vol.35). pp. 153-154.

58 최상오. 2003. 앞의 글. pp.133.

59 이대근. 2002. 앞의 책. pp.124.

60 Comparative data on North and South Korea Reconstruction, Central Subject Files, 1950 – 1956 [Entry UD 1276],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Mission to Korea. Executive Office, Economic Condition.

61 Preliminary Report of Budget Review Group on the ROK Comprehensive Budget, FY 53-54, Pusan, 30 December, 1952.

62 Comparative data on North and South Korea Reconstruction, Central Subject Files, 1950 – 1956 [Entry UD 1276],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Mission to Korea. Executive Office, Economic Condition.

63 차철욱. 2003.「1950년대 미국의 대한 원조정책 변화와 이승만정권의 수출정책」.『지역과 역사』. 11호, pp. 229-230

64 이대근. 2002. 앞의 책. pp. 351

65 최상오. 2003.「이승만 정부의 수입대체공업화와 한.미간 갈등」.『특집 선진국경제를 위한 한국경제의 성찰』. pp. 150

66 Meyer Agreement, 1952.05.24.,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군 총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통첩 전문, 앞의 출처와 같음 (검색일 2016.05.16.)

67 백.우드 협정, http://www.mofa.go.kr/search/search.jsp?searchData=대한민국과%20미합중국간의%20경제재건과%20재정안정계획에%20관한%20합동경제위원회%20협정&csq={content:대한민국과%20미합중국간의%20경제재건과%20재정안정계획에%20관한%20합동경제위원회%20협정} (검색일 2016.02.12.).

68 최상오. 2003. 앞의 글. pp.155-157.

69 RG 469, Office of the Controller, Counterpart Funds Section, Entry # 1277A, Box. No. 2, Monthly Report : the Details of C/P Funds & Collection Accounts FY 1958.

70 CEBORC-Min-52-2-Agreed, 5 August 1952, RG 469, Foreign Country Offices, United States Operating Missions, Mission to Korea, Overall Requirements Committee, Entry 1277OB, Meeting Minutes, 1952-60, Box 1.

71 CEBORC-Minutes-52-2-Agreed, 5 August 1952, RG 469, Foreign Country Offices, United States

Operating Missions, Mission to Korea, Overall Requirements Committee, Entry 1277OB, Meeting Minutes, 1952-60, Box 1.

72 CEB-Min-56-22,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

73 CEB-Min-57-15,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

74 CEB-Min-57-52,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

75 재정안정계획,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090 (검색일 2016.06.20.).

76 재정안정계획,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090 (검색일 2016.06.20.).

77 재정안정계획,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090 (검색일 2016.06.20.).

78 재정안정계획,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090 (검색일 2016.06.20.).

79 재정안정계획,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090 (검색일 2016.06.20.).

80 재정안정계획,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090 (검색일 2016.06.20.).

81 재정안정계획,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090 (검색일 2016.06.20.).

82 CEB-Min-57-27,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2.

83 CEB-P-57-205-Finalized May 29, 1957,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2.

84 Airgram,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From CINCUNC Seoul Toica, Stabilization

Program, 15 Oct, 58

85 CEB-P-58-89-Finalized March 12, 1958, CEBFIN, Agreed March 11, 1958,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3.

86 CEB-Min-58-10,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7, Board Meeting Minutes, 1952-61.

87 CEB-Min-58-39,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7.

88 CEB-Min-59-17,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9.

89 재정안정계획,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090 (검색일 2016.06.20.).

90 CEB-P-60-75,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5.

91 CEB-Min-59-14, RG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No. 8.

92 CEB-Min-60-31,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6.

93 CEB-Min-61-2, August 22, 1961,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6.

94, 95 이현진. 2002. 앞의 책. pp. 217-218.

96 Park Tae Gyun. 1999. 앞의 글. pp. 100.

97 박태균. 2007.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p. 15.

98 CEB-MIN-56-1,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

99 CEB-Min-56-2,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

100 CEB-Min-57-28,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2.

101 CEB-Min-56-24,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

102 CEB-Min-58-20, June 11, 1958,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3.

103 박태균. 2007. 앞의 책. pp.213.

104 이대근. 2002. 앞의 책. pp.350.

105 박태균. 2007. 앞의 글. pp.213.

106 박태균. 2009. 앞의 글. pp.214.

107 CEB-Min-57-28,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2.

108 CEB-Min-56-2,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

109 CEB-Min-58-9,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3.

110 CEB-Min-58-37,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5.

111 이현진. 1999. 앞의 책. pp.413.

112 Annex V to CEB-P-57-325,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2.

113 CEB Min-59-18,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9.

114 CEB-MIN-56-1,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

115 CEB-MIN-56-11,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

116 CEBORC-Min-57-2, 24 January, 1957, RG 469, Mission to Korea, Program Coordinatinon Office,

CEB SEC, USOM Korea, CEBORC MINS to MTGS, 1952-60, Entry # 1277OB, Box No. 1.

117 22-206 [Philco Corporation(Korea) Contract No. ICA-X-8],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U.S. Operations Mission to Korea. Office of Government Services. Program Implementation Division. Technical Cooperation Training Branch. (07/01/1959 - 11/03/1961).

118 한봉석. 2015.「1950년대 미국 대한기술원조의 역사적 한 맥락」.『한국인물사연구』. Vol. No.23. pp.357.

119 CEB-Min-58-41,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7.

120 이현진. 2002. 앞의 글. pp.302.

121 CEB Min-59-1,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8.

122 CEB-Min-56-11,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

123 CEB-Min-59-1,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CEB SEC, Entry # 1277DH, Box No. 8.

124 CEB Min-59-19,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9.

125 박태균. 2003. 앞의 글. pp.33.

126 CEB Min-58-37,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7.

127 CEB-Min-57-45,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Entry # 1277DH, Box No. 2.

128 CEB-Min-57-24,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2.

129 CEB-Min-57-14,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1.

130 대한민국 부흥부. 1957. 『부흥월보』 2권 9호, pp.66-68.

131 CEB-Min-57-44,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Entry # 1277DH, Box No. 2.

132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2.

133 CEB-Min-58-37, 17 October, 1958,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 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7.

134 Basic Documents, 1952 - 1961 [Entry UD 1277DA], UNC-ROK Ad hoc Committee proposal Export Promotion Committee Charter, 20.5.1959.

135 CEB-Min-58-14, RG 469, Mission to Korea, Office of theController, CEB SEC, Entry # 1277DH, Box No. 4.

<Abstract>

A Research on U.S. Economic Aids to South Korea in the 1950s: Focusing on the Combined Economic Board (CEB) Minutes

Le My Chi

Korean Studies Major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economic aids to South Korea in the 1950s was an important source of South Korean capital accumulation which contributed greatly to its economy. But the increase in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caused by the Korean War had brought a large financial burden to the U.S. government. In 1953, U.S. President Dwight Eisenhower established the New Look policy to create a sound fiscal condition in order to tackle the deficit that was rampant at the moment. As a result, the U.S. sought to reduce aids to under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n the context of a settled Cold War, the U.S. could 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South Korea in terms of military and politics. Given these problems, the U.S. conducted a policy which was based on economic stabilization, military assistance and foreign private investment. Therefore, anti-inflation policy was continuously implemented for economic stability throughout the 1950s. Moreover, since a significant proportion of U.S.

economic aids to South Korea was diverted to pay for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defense capacity, the military nature of U.S. economic aids to South Korea in the 1950s became obvious.

Meanwhile, the Combined Economic Board (CEB) was established in 1952 as an examination agency responsible for efficiently implementing and controlling U.S Economic aids to South Korea. By investigating the CEB Minutes, this research points out that the CEB focused on relief and reconstruction issues in the early 1950s yet carried out the programs that concerned economic revival in the late 1950s. This includes emphasizing technical assistance and imposing Development Loan Fund (DLF) that changed gradually from grant to loan-base. These changes in CEB documents in the late 1950s, however, are not the fundamental changes in U.S. Economic Aid Policy to South Korea. The ultimate goal of U.S. Aid Policy towards South Korea was to stabilize its troublesome economy.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stabilization policy aimed at fighting inflation was implemented simultaneously with economic revival programs, to this research point of view, was irrational. It was also difficult to carry out both programs at the same time.

Keywords: Combined Economic Board (CEB) Minutes, 1950s U.S. Economic Aids to South Korea, Anti-inflation policy, Counterpart fund, Development Loan Fund (DLF), PL 480

Student ID Number: 2013-24017